

KOTRA자료 15-001

2015. 01. 02

2015년 이후 유럽 각국의 주요 제도 변화



목 차

요 약

2015년 이후 유럽 각 국의 주요 제도 변화

1	EU 차원
39	주요 국가별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요 약

2015년 이후 제도 변화를 통해 유럽은 3T(Technical barrier, Trade, inTegration)를 화두로 제시

1 | 높아지는 EU 비관세장벽 (Technical Barrier)

- 보건, 에너지, 환경 등을 위한 각종 규제 강화는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 높아
 - 2015년 6월부터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 규정(CLP)을 혼합물 및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
 - 2015년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 전기·전자 제품에 가정용 오븐, 히터, 온수기 등으로 단계적 확대
 - 2015년 9월부터 경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EURO 6 적용 시작

2 | 넓어지는 EU 역외 시장 (Trade)

-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우리의 FTA 선점 효과 상쇄 우려
 - 미국(8차 협상 '15.2 개최 예정), 캐나다('14.9 협상 타결; 15년 내 비준 목표), 베트남(11차 협상 '15.1 개최 예정), 일본(9차 협상 '15.2 개최 예정) 등과의 2015년내 FTA 체결(발효) 임박
 - 중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협상도 원활히 진행
 - 철강, 금속류를 중심으로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한 수입규제는 여전

3 | 깊어지는 EU 역내 시장 (inTegration)

- 조세, 노동 등에서의 제도 개선으로 역내 통합 박차
 - 2015년부터 방송, 통신 및 전자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의 위치와 관련 없이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VAT를 부과
 - 네덜란드를 비롯한 각 국은 이를 반영하여 자국 법령 개정
 - 전문 인력의 역내 이동 자유화를 위해 2016년부터 유럽직업카드(European Professional Card; EPC) 제도 도입
 - 2016년부터 전자 공공조달(e-Procurement) 단계적 의무화로 역내 공공조달 시장 통합 촉진

1 EU 차원

통상

【2015년도 공동관세규정(CCT) 발표】

- 1968년 시행되어 온 유럽공동체의 관세에 관한 정식 규정
- 통합관세품목분류(Combined Nomenclature) 등 포함

※ [원문 링크](#)

【EU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2014.12 기준)】

- 개별 협정(FTA) 체결 22건, 협상 8건이며 다자간 협정은 5건 협상 중
 - * 중국의 경우 투자협정 현재 협상 중(2013년부터)
- 세부 현황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2010) * 2011.07 발효 · 남아프리카공화국(1999) · 레바논(2002) · 멕시코(1997) · 모로코(1996) · 안도라(1991) · 몬테레그로(2010) · 요르단(1997)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8) · 세르비아(2010) · 시리아(1977), · 알바니아(2009) · 알제리(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8차 협상 '15.2 개최 예정) · 캐나다 (‘14.9 협상 타결; 15년 내 비준 목표) · 리비아 (2011.2월; 협상 중단) · 인도 (직전 협상: 2010.11월) · 말레이시아 (직전 협상: 2012.4월) · 아르메니아 (직전 협상: 2013.9월) ·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라루스 · 러시아 · 이라크 · 아제르바이잔 · 이란 · 파키스탄 · 카자흐스탄 · 코소보 · 중국 (양자간 투자협정; BIT 협상 중) · 인도네시아 · 필리핀

협정	기체결(체결시기)	협상 중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2000) · 이집트(2004) · 터키(1995) · 팔레스타인(1997) · 칠레(2002) · 튀니지(1995) · 우크라이나(2014) · 몰도바(2014) · 그루지아(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차 협상 '15.1 개최 예정) · 일본 (9차 협상 '15.2 개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리비아 · 브루나이
다자간 무역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2012.12월 싱가포르와 FTA 타결, 나머지 국가와는 협상 중) · GCC(걸프협력회의, 2008년 이후 협상 중단) · MERCOSUR(남미공동시장, 직전 협상: 2014.3월) · ACP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직전 협상: 2014.4월) · ANDEAN 공동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2013.3월), 콜롬비아(2013.8월), 에콰도르(2014.7월)와 협상 완료 - 볼리비아와는 협상 검토 중 	

자료원: EU 집행위 및 언론보도 종합

【2014년 EU의 수입규제 동향('14.11.30일 기준)】

□ 對韓 수입규제 내역

- 2014년 EU의 대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3건이 규제 중이며, 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으로 판정받아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2개 품목, 화학 1개 품목이 규제대상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	730793,7 30799	반덤핑	'01.06.01	반덤핑: '08.10.13	철강 및 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06.01 반덤핑 조사개시 - '02.08.24 최종 판정(한국산 확정 관세율 44%) - '07.08.13 일몰재심 조사개시 - '08.10.1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 - '13.10.15 일몰재심 개시 - '14.12.02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18.01.29까지)
철강로프 및 케이블	731210	우회반 덤핑 (중국)	'09.08.12	중국산 한국 우회덤 핑에 대한 반덤핑 '12.02.09	철강 및 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08.12 조사개시 - '10.05.11 반덤핑 판정: 중국산 한국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60.4% 부과(조사 협력 한국 업체 우회덤핑 관세 부과 면제) - '11.09.30 신규수출자 재심 및 '12.06.26 해당없음 판정 (Seil Wire) - '12.02.09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 유지 결정 (우회덤핑 반덤핑 조치 역시 유지) - '13.08.27 신규수출자 재심, 중간재심 및 '14.05.12 해당없음 판정 (Good wire, Line metal) - 우회덤핑 규제대상 제외업체는 아래 세부내용 참고 바람
실리콘 메탈	280469	우회반 덤핑 (중국)	'06.04.20	반덤핑: '10.05.20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04.20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개시 - '07.01.19 우회덤핑 최종판정(확정관세 49%) - '10.05.20 일몰재심 최종 지속 판정(확정 관세 유지)

자료원: EU 집행위

○ 철강제 관련결구류(반덤핑)

- '동 품목의 경우 EU 이사회 규정 No. 1001/2008에 의거 현재 4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EU 반덤핑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당초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부과되며 이후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요청이 없으면 자동 종료됨. 역내 업체의 지속 부과요청이 있을 경우 EU집행위는 조사를 개시해 지속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됨
- 2013년 10월 17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철강제 관련결구류에 대한 역내 산업(Defense Committee of the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의 재심 개시 요청(2013.06.26)이 있었음
- 집행위는 2013년 10월 15일 관보를 통해 반덤핑 종료 재심을 개시하기로 공표 후, 2014년 12월 2일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2018년 1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일몰 재심 결과를 확정 발표함

○ 철강로프 및 케이블(우회덤핑)

- 동 품목은 EU 이사회 규정 No. 102/2012에 의거, 60.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2013년 8월 EU 집행위는 Good wire사와 Line Metal사의 중국 우회수출 규제 대상제외를 위한 재심 요청을 받아, 조사 개시를 공표했음
 - 조사 개시일: Good wire사(2013.08.27.), Line Metal사(2013.08.28.)
- 2014년 5월, EU 집행위 조사 결과 위의 두 업체는 우회덤핑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업체리스트에 등재됨
 - 2014.05.12. Line Metal 규제 대상 제외 판정(관련 규정 No. 489/2014)
 - 2014.05.13. Goodwire 규제 대상 제외 판정(관련 규정 No. 493/2014)
-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업체는 총 14개이며, 업체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보성선재	Bosung Wire Rope Co., Ltd
청우제강	Chung Woo Rope Co., Ltd
씨에스	CS Co., Ltd
코스모와이어	Cosmo Wire Ltd
대흥산업	Dae Heung Industrial Co., Ltd
DSR제강	DSR Wire Corp.
굿와이어	Goodwire MFG. Co. Ltd
고려제강	Kiswire Ltd
만호제강	Manho Rope & Wire Ltd
라인메탈	Line Metal Co. Ltd
세일제강	Seil Wire and Cable
신한제강	Shin Han Rope Co., Ltd
쌍용선재	Ssang YONG Cable Mfg. Co., Ltd
영흥철강	Young Heung Iron & Steel Co., Ltd

자료원: EU 집행위

○ 실리콘 메탈(우회덤핑)

- 동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중인 19%의 반덤핑 관세의 우회 혐의에 따른 우회덤핑관세로, 한국 제품 수출 시 우회수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 EU 역외국 전체에 대한 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14년 11월 30일 기준 수입규제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방향성 규소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참고) 2014년 EU 역외국 관련 수입규제 현황

- 201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EU는 총 82건의 반덤핑 규제를 하고 있으며, 13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조사 중인 건수는 총 52건에 달함
- 2014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EU에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32건으로 신규조사가 12건, 우회반덤핑 조사가 3건, 재심조사가 17건임
 - 신규조사 대상품목 12건 중 5건이 방향성 규소강(Grain 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품목에 관한 것이며 3건은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품목에 관한 것으로 동 품목에 반덤핑 2건, 반보조금 1건의 조사를 받고 있음
 - 재심조사 17건 중 총 11건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EU 최대견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조사 유형은 종료재심(Expiry review) 10건, 중간재심(Interim review) 5건, 신규수출자 재심(New exporter review) 2건임

<2010년~14년(11월 30일) 간 품목별 신규 조사 현황>

A. New investigations initiated by product sector during the period 2010 - 2014

Product sector	2010	2011	2012	2013	2014
Chemical and allied	7	11	-	1	1
Textiles and allied	-	-	-	3	-
Wood and paper	2	-	-	-	-
Electronics	2	-	2	-	-
Other mechanical engineering	1	1	1	-	-
Iron and Steel	3	6	11	1	8
Other metals	-	1	-	-	1
Other	3	2	5	4	2
	18	21	19	9	11 → 12 (주)표에 오기
Of which anti-dumping	15	17	13	4	10
anti-subsidy	3	4	6	5	2

자료원: EU 집행위

<2014년 이후 조사가 개시된 EU 수입규제 현황>

규제 유형	품목 명	국명
반덤핑	송어(Rainbow trout)	터키
반덤핑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중국 대만
반덤핑	방향성 규소강(Grain 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반덤핑	아세실팜칼륨(Acesulfame Potassium)	중국
반덤핑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in rolls of a weight exceeding 10 kg))	러시아
반보조금	송어(Rainbow trout)	터키
반보조금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	중국
우회반덤핑	자전거(Bicycles)	중국
우회반덤핑	자전거(Bicycles)	중국
우회반덤핑	자전거(Bicycles)	중국
신규 수출자 재심	핸드팔렛 트럭 및 주요 부품 (Hand pallet trucks and their essential parts)	중국
신규 수출자 재심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Trichloroisocyanuric acid)	중국
중간 재심	세라믹 타일(Ceramic tiles)	중국
중간 재심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AS))	인도
중간 재심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PET)(AS))	인도
중간 재심	유리섬유의 오픈 메쉬 직물(Open mesh fabrics of glass fibres)	중국
중간 재심	철강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우크 라이나
종료 재심	철로 된 잠금장치 (Fasteners, of iron or steel)	중국
종료 재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와이어 및 스탠드(PSC wire and stands)	중국

규제 유형	품목 명	국명
종료 재심	양초(Candles, tapers and the like)	중국
종료 재심	바이오디젤(Biodiesel(AD))	미국
종료 재심	바이오디젤(Biodiesel(AS))	미국
종료 재심	선재(Wire rod)	중국
종료 재심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s, of iron or steel)	중국
종료 재심	무계목강관(Seamless pipes and tubes of iron or steel)	중국
종료 재심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in rolls of a weight exceeding 10 kg))	브라질 중국

자료원: EU 집행위

※ [원문 링크](#)

【2016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제외 국가 발표】

□ 추진 배경

- EU는 개도국 수출업체가 EU역내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GSP)를 운영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개도국의 EU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한 해당국 경제 성장 및 상호 교역 증대에 기여

□ 주요 내용

- 2016년부터 EU GSP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가들
 - 투르크메니스탄,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 적용 시점: 2016년

□ 기대 효과

- 201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GSP보다 자격 조건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 신일반특혜관세제도가 시행 중임
- 새로운 제도에 따른 기존 GSP 수혜국 대신 더 절실한 저개발국가의 EU 수출 확대

※ [원문 링크](#)

화학물질 규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 규제(CLP) 확대】

□ 추진 배경

- 화학물질 표기 방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고위험 물질 통제 및 소비자 보호 수준 개선

□ 주요 내용

- 단일 화학물질에만 적용되었던 CLP 규제*를 2015년 6월 1일부터 혼합물 및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

*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e): UN의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대응하기 위해 EU에서 기존의 유해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지침(DSD)과 유해 혼합물 분류, 표시 및 포장지침(DPD)을 수정, 보완한 규정

- CMR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 Carcinogenic, mutagenic, reprotoxic)도 포함
- 적용 시점: 2015년 6월 1일

<유해물질 표지 예시>



자료원: 유럽화학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

□ 기대 효과

- 유해성 표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확대 및 유해성이 적은 제품의 구매 증가 유도

※ [원문 링크 1: CLP](#)

※ [원문 링크 2: 유해물질 표지](#)

【화장품 내 파라벤 및 CIT/MIT 허용수치 강화】

□ 추진 배경

- 파라벤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 지속
- 화장품을 제조할 때 데이터 부족으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파라벤과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 규제 강화 추세

□ 주요 내용

- 지금까지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0.4%, 혼합물의 경우 0.8%까지 허용되어 왔으나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단독 및 혼합사용 모두 최대 0.14%까지로 허용기준치가 한층 강화됨
 - 단, 3세 이하의 유아용 기저귀 등 잔류성 제품에는 전면 사용 금지
-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치아졸린 혼합물(MCI/MI)의 바디로션 등 잔류성 제품에 대한 사용이 전면 금지됨
 - 단, 세정용 린스오프(Rinse-off) 제품들에 대해서는 3:1 비율로, 최대 농도 0.0015%까지 허용
- 적용 시점
 -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2015년 4월 16일
 - MCI/MI: 2015년 7월 16일

□ 기대 효과

- 유해 물질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를 포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해 물질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 [원문 링크](#)

【버튼전지 수는 함유량 0.0005% 이하로 제한】

□ 추진 배경

- 무수은 버튼 전지 사용 증가

- 그동안 버튼 전지에 대해서는 다른 전지에 적용되었던 수은 사용 함유량 제한(<0.0005%)이 면제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무수은 버튼 전지 시장의 확대로 EU 회원국들은 이같은 면제 조항을 없애야한다고 주장

□ 주요 내용

- 버튼전지(Button Cell)의 수은 함유량을 중량 기준 현재 2%에서 0.0005%로 제한
 - 2014년 10월 예외사항을 검토했던 보청기용 단추형 전지도 무수은 전지 사용 가능성이 증명됨에 따라 0.0005%이하로 수은 함유량이 제한될 예정
- 적용 시점: 2015년 10월

□ 기대 효과

- 수은에 대한 보건 및 환경오염(토양 등) 개선

※ [원문 링크 1: 단추형 전지 내 수은 함유량 제한 강화](#)

※ [원문 링크 2: 보청기용 무수은 단추형 전지 사용 가능성](#)

【장난감 비스페놀 A(BPA) 사용 제한 및 니켈에 대한 예외 사항】

□ 추진 배경

-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유해성 물질 관리 강화 추세

□ 주요 내용

- EU, 2015년 12월 21일부터 6개월 이하 유아용 장난감 또는 구강 접촉용 장난감에 비스페놀 A 사용을 0.1 mg/l로 제한
 - 비스페놀 A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제(CLP) 규정에 따라 카테고리2 발암물질(CMR2)으로 분류
- 반면, 2015년 7월 1일부터 CMR2로 분류되는 니켈의 경우 전기 장난감에 한해 허용
 - 제한된 대체 물질로 인해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진 장난감과 장난감 부품 그리고 전류 전도용 장난감 부품에 한해 니켈 사용이 허용됨.
- 적용 시점
 - 비스페놀 A(BPA): 2015년 12월 21일
 - 니켈: 2015년 7월 1일

□ 기대 효과

- 비스페놀A의 신체에의 영향에 관한 연구 진행에 박차
- 추후 연구 결과에 따라 관련 기준 더욱 강화 예상

※ [원문 링크 1: 비스페놀 A 제한](#)

※ [원문 링크 2: 니켈 제한](#)

에너지 절감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전기·전자제품 확대】

□ 추진 배경

- 2014년 6월부터 EU의 에너지효율지침이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음
- 2014년 4월까지 EU 회원국은 국가별 에너지 효율 계획을 EU에 제출하였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별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필요

□ 주요 내용

(가정용 오븐)

- 가정용 오븐에 신규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 전기 오븐과 가스 오븐에 따라 다른 라벨을 사용
 - * 에너지원별 에너지효율 등급 책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 에너지라벨 효율 등급을 기존 A~G에서 A+++~D등급으로 개정
- 적용 시점: 2015년 1월 1일

(난방용 스팀 히터)

- 난방용 스팀 히터에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 에너지라벨 효율 등급을 A++(최고등급)에서 G(최저등급)까지로 구분
 - * 2019년부터는 A+++ (최고등급)에서 D(최저등급)으로 바뀜

- 적용 시점: 2015년 9월 26일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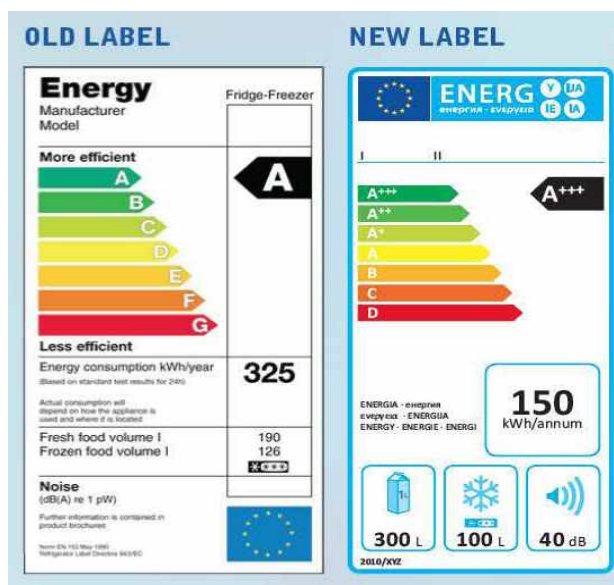
(온수기 및 온수 저장 탱크)

- 온수기(태양열 온수기 포함) 및 온수 저장 탱크에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 에너지라벨 효율 등급을 A(최고등급)에서 G(최저등급)까지로 구분
- 적용 시점: 2015년 9월 26일

□ 기대 효과

-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강화로 고효율 제품 개발 및 구매 유도
-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높이기로 한 EU 에너지 효율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EU의 에너지라벨링 예시



자료원: www.newenergylabel.com

- ※ [원문 링크 1: 에너지 효율 지침 개관](#)
- ※ [원문 링크 2: 가정용 오븐](#)
- ※ [원문 링크 3: 난방용 스팀 히터](#)
- ※ [원문 링크 4: 온수기 및 온수 저장 탱크](#)

【B등급 이하의 할로겐 램프 판매 금지】

□ 추진 배경

- EU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 전력량이 높은 전구의 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해 옴
- 2009~2012년까지 백열전구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현재는 EU에서 백열전구 판매는 완전 금지 상태

□ 주요 내용

- 에너지 효율 B등급 미만(C~G)의 할로겐램프 및 모든 조명기구 판매 전면 금지
- 적용 시점: 2016년 9월
 - 다만 LED 조명 등 대체재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용시기가 2년 후인 2018년 9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음

□ 기대 효과

- 백열등에 이어 할로젠 램프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됨으로써 향후 약 80억 개에 달하는 가정용 전구, 가로등 및 조명등이 LED와 OLED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 [원문 링크 1: 램프 에코디자인 지침](#)

※ [원문 링크 2: EU LED 조명 시장 전망](#)

【커피머신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강화】

□ 추진 배경

- TV, 주방기기, 전구 등 생활 용품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규제 강화 추세

□ 주요 내용

- 커피머신의 대기 시간 및 보온 기능의 오프모드 규제하는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강화
- 커피머신의 종류에 따라 최대 40분 이하로 대기시간을 규제하고 보온기능도 특정시간 이후 자동오프를 의무화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함에 따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제품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원문 링크](#)



【경상용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URO 6 적용】

□ 추진 배경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위해 1993년부터 유로(EURO1) 기준 채택
- 주기적 개정을 통해 규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경상용자동차에 EURO 6 적용
 - 시험 중량이 1,305kg을 초과하는 경상용자동차가 대상
 - * 휘발유 및 경유 승용차 그리고 1,305kg 이하 휘발유 및 경유 경상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적용됐음
 - EURO 6는 이전에 시행되어 왔던 EURO 규제 중 가장 높은 배출가스 규제로 이전의 EURO 5 보다 질소화합물(NOx)는 80%, 분진(PM)은 50%까지 줄여야함
- 적용 시점: 2015년 9월

□ 기대 효과

- 보다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
- EURO 6 기준에 맞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 적용 등으로 해당 자동차 가격 상승 우려

※ [원문 링크](#)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g/km로 규제】

□ 추진 배경

-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

□ 주요 내용

- 유럽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엔진기술로 130g/km까지 감축해야함
 - 타이어와 연료 등을 통해 10g/km를 추가적으로 감축
- 모든 승용 및 경상용 자동차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됨
 - 그러나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대수가 연간 30만 대 이하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 기대 효과

- 2021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km 이하로 감축 목표

※ [원문 링크](#)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강화】

□ 추진 배경

- 2009년 1월 EU는 '해상운송전략 2009~2018'이라는 장기 계획 발표

- 이를 통해 폐기물 제로, 배기가스 제로를 녹색 해운의 목표(Green Shipping)로 제시

□ 주요 내용

- 유럽 SECAs* 지역을 이동하는 선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유황 함유량이 0.10% 이하인 연료를 사용해야 함
 - * Sulphur Emission Control Area: 발틱해, 북해, 영국해협을 포함하는 지역
- 다른 해협을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연료의 유황함유량을 0.50%까지 낮춰야함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LNG등 친환경 연료 선박 개발 및 사용 촉진

※ [원문 링크](#)

【어획물 해상 폐기 행위(discarding) 금지 어종 확대】

□ 추진 배경

- EU 내 잘못된 식용 어류 폐기 관례 종식

□ 주요 내용

- EU는 2014년부터 어획물 해상 폐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함

- 2014년에는 고등어, 청어 등의 원양어류를 폐기 금지 조치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015년부터는 대구, 넙치, 해덕, 가자미 등의 흰살 생선도 금지 조치 대상임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2019년까지 모든 어종을 해상 폐기행위 금지 조치 대상으로 지정 전망

※ [원문 링크](#)

【침입외래종 규제 및 관리 강화】

□ 추진 배경

- EU에 따르면 유럽 대륙 내 12,000종의 외래종이 서식하며 이중 10~15%가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인 것으로 알려짐
- 기후 변화 등으로 외래종 및 침입외래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주요 내용

- 예방, 조기경보, 신속대응 및 관리의 4단계 외래종 관리 체계 규정
- 관리 대상 외래종 리스트 적시
- 적용 시점: 2015년

기대 효과

- 침입외래종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생물학적 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 [원문 링크](#)

 **보건 및 안전**

【살충제 잔류 기준 강화】

추진 배경

- EU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살충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EU Pesticide Database(ec.europa.eu/sanco_pesticides/public/?event=homepage)를 운영 중

주요 내용

- 상기 웹사이트에서 최대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 MRL) 검색 가능
- 2015년부터 바뀌는 기준은 2015년 1월 5일부터 검색 가능

기대 효과

- 살충제 잔류 기준 철저한 관리 및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원문 링크](#)

【식품 라벨 규정 강화】

□ 추진 배경

- 보다 읽기 쉽고 명확한 식품 라벨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에 근거한 식품 선택을 하도록 유도

□ 주요 내용

- 가공 식품 및 비가공 식품의 라벨 규정 강화
 - 가공 식품의 영양 정보 의무 표기
 - 가공되지 않은 돼지, 양, 염소 및 가금류 고기의 라벨에 원산지 의무 표기
- 포장 식품의 성분 표시에 콩, 견과류, 글루텐, 유당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명확하게 표기
 - 폰트, 스타일 및 배경색 등의 강조를 통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
 - 음식점 및 구내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의무 표기를 포함
- 적용 시점
 - 2014년 12월 13일부터 즉시 시행 중
 - 가공식품의 영양 정보 의무 표기 적용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 기대 효과

- 소비자들의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알레르기성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됨.

※ [원문 링크](#)

【차량용 비상전화 장치 eCall 시스템 장착 의무화】

□ 추진 배경

- EU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
 - 2011년 기준, EU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만 8천 명, 부상자 수는 약 150만 명에 달함

□ 주요 내용

-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승용차 및 5톤 이하 트럭 내 eCall 시스템 의무 장착
 - eCall 시스템은 사고 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전화 장치임
 - 사고발생 시 차량 내 장착된 SIM 카드가 차량 유형, 위치, 운행 방향, 작동 중인 안전벨트 수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사고 발생 인근 관할 긴급구조대에 송신
 - 동시에 EU 내 긴급전화인 112가 자동으로 작동돼 신고가 접수됨

- eCall 시스템 장착을 위해서는 차량 내 GPS 수신기가 사전 장착되어 있어야 함

- 설치비용은 차량 당 약 100유로로 예상됨

- 적용 시점: 2018년 4월

□ 기대 효과

- 구조대의 사고현장 도착시간 단축(현재 대비 40~50% 감소)에 따른 인명구조 증가

- * 연간 2,500명 이상 사상자 감소 예상

※ [원문 링크 1 : EU 교통사고 피해](#)

※ [원문 링크 2 : eCALL 시스템](#)

인프라 및 역내 통합

[EU 운송망 확대 프로젝트(TEN-T) 회원국 실행 계획 작성]

□ 추진 배경

- EU는 2020년까지 총 260억 유로 규모의 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프로젝트를 통해 EU 전역의 총 9개의 간선망 (Core Network Corridor)*를 정비하여 EU의 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 남-북(이탈리아↔스웨덴), 동-서(에스토니아↔네덜란드) 등

□ 주요 내용

-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에게 유럽 운송 허브 향상을 위해 EU 기금 119억 유로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을 요구
- 기한: 2015년 2월 26일 전까지

□ 기대 효과

- 2030년까지 ① 94개의 항만을 철도와 도로로 연결, ② 38개의 공항을 인근 대도시와 철도로 연결, ③ 15,000km의 구간을 고속철도화, ④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35개의 복수 회원국 참여 프로젝트 추진 기대
- LED 가로등 등 LED 공공조달 (간접)참여, 고속철도 프로젝트 참여, 철도차량 GP사업 추진 등 사업기회 발생 기대

※ [원문 링크](#)

【유럽단일항공체계(Single European Sky) 추진】

□ 추진 배경

- 2004년 이후 EU는 유럽내 단일 항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 이를 위해 EU집행위는 SESAR*라는 유럽의 ATM*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 옴. 이는 항공교통 통신, 항법 및 감시 관리, 운용 및 기술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임.
- * SESAR: Single European Sky Air traffic management Research(단일유럽 항공교통관리연구)
- * ATM: Air Traffic Management(항공교통관리)

□ 주요 내용

- 2014년 12월 5일 EU 집행위는 유럽단일항공체계 구축을 위해 30억 유로 상당의 EU 기금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유럽 단일 ATM 시스템을 통한 비행 안정성 개선, 비행시간 단축 및 운영비용 절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투자가 주요 골자
- 적용 시점: 2015년 이후

□ 기대 효과

- 2030년까지 약 4000억 유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과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기대
- 5천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절감

※ [원문 링크](#)

【주요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6.5억 유로 배정】

□ 추진 배경

- 2014-2020년에 EU 전역에 걸쳐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400억 유로 상당의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운용 예정

□ 주요 내용

- 이 중 6억 4700만 유로를 주요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배정됨

- 대부분의 기금은 직간접적으로 가스 사업에 지원될 예정
 - 새 파이프라인 건설과 발틱 및 동유럽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을 위한 터미널 건설
- 그 밖에 전기 신기술 개발에도 지원 예정
 - 영국-노르웨이(700km)를 연결하는 해저 고압 직류 케이블 연구 등
- 적용 시점: 2020년까지

□ 기대 효과

- EU 역내외 에너지 운송의 안정성을 높이고 회원국들에게 에너지 보급의 지속 가능성 보장

※ [원문 링크](#)

【EU 역내 철도 여객서비스 개방】

□ 추진 배경

- 2013년 1월 EU집행위원회는 제4차 레일패키지를 제안
 - EU역내 자유로운 철도서비스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

□ 주요 내용

- 제4차 레일패키지는 철도 운영부문의 전면 시장 개방이 목표로, 국내 철도 여객 서비스 시장 개방도 포함

- 2019년 12월부터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철도 선로 및 신호 등 관련 작업들을 통일해야함
- 이미 2007년에는 철도 화물 서비스를, 2010년에는 국제 철도 여객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음

○ 적용 시점: 2019년 12월

□ 기대 효과

- 현재 회원국 간 입장 차이와 철도 노동자들의 명백한 반대 입장으로 실행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유럽단일항공체계(Single European Sky) 등 운송 부문의 역내 통합(단일 시장화) 추세에 따라 철도 부문의 역내 시장 개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원문 링크](#)

조세(부가가치세)

【방송, 통신 및 전자 서비스 분야 부가가치세(VAT) 부과 방법 변경】

□ 추진 배경

- 2008년 VAT 패키지의 일환으로 EU VAT 규정 채택

□ 주요 내용

- EU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방송, 통신 및 전자 서비스에 대해 공급

자의 위치와 관련 없이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VAT를 부과

- EU 공급업체는 EU 외부시장에서 판매하는 관련 제품에 대해 더이상 VAT를 징수할 필요 없음
- 반면 비EU 공급업체가 EU내 비과세대상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VAT를 징수해야 함
 - * 비EU 공급업체가 EU 내 기업고객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수입업체가 VAT를 납부.

○ 적용 시점: 2015년 1월 1일

□ 기대 효과

- VAT 부과 기준의 명확화 및 EU 업체의 역외에서의 가격 경쟁력 상승

※ [원문 링크](#)

【방송, 통신 및 전자 서비스 분야 One Stop Shop 시행】

□ 추진 배경

- EU VAT 지침에 따라 역내 VAT 부과에 관한 통일된 규정 확대

□ 주요 내용

- 전자 서비스 및 텔레콤 분야에도 One Stop Shop*을 시행
 - * 사업자가 여러 EU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 회원국중 1개 회원국에만 등록하고 해당 회원국에 VAT를 일괄 납부하면 해당 회원국이 소비자 기준에 의거하여 VAT를 관련 회원국들에게 분배

-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되어 EU 내 영업 활동에 대해 1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면 충분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 및 EU 모든 회원국에서 단일 VAT 사용을 통해 VAT 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모든 부가가치세 대상으로부터 징수를 했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기대 세입(the expected VAT revenue)에서 실제 징수된 부가가치세 세입의 차이

※ [원문 링크](#)

노동 및 인적자원개발

【2015년 Erasmus + 사업 일반 공고 및 가이드라인 발표】

□ 추진 배경

- Erasmus* + (에라스무스 플러스) 사업은 기존 Erasmus Mundus 사업(1987-2013)을 계승·확대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U내 대학 간 또는 제3국과의 공동 프로그램 또는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사업
- *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 주요 내용

- 동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EU 대학, 학생, 교수 인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모가 가능하며, 크게 다음의 5개 분야로 구성됨(괄호 안은 참가신청 기한)

- Credit mobility: 학생들에게 유럽 내 다양한 학교에서의 학습기회 제공 및 학점이전, 교수인력 인적교류 지원 등(~2015.3.4)
- Capacity-Building for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 기관 간 국제협력 촉진 (~2015.2.10)
- Jean Monnet: 유럽 및 유럽연합 관련 학문 분야의 교육, 연구 촉진 (~2015.2.26)
- Strategic Partnerships & Knowledge Alliances: 산·학·연의 전략적·장기적 협력 강화 (~2015.2.26)

□ 기대 효과

- EU 역내 외 대학 간 공동연구 및 협력 촉진

※ [원문 링크](#)

【유럽직업카드 발급】

□ 추진 배경

- 노동이동의 자유화 확대를 통한 역내 통합 가속화

□ 주요 내용

- EU는 2016년부터 유럽직업카드(European Professional Card; EPC)를 발행할 계획
- EU 회원국 내 어디에서나 쉽게 특정 업무에 맞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간호사,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엔지니어, 산악 가이드, 부동산 중개인 등 전문 직업군은 전자식별 절차를 통해 EU 회원국 어디서든 전문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 적용 시점: 2016년부터

□ 기대 효과

- EU 역내 노동 이동의 가속화로 역내 통합 진전

※ [원문 링크 1: 유럽 직업 카드 발급 대상](#)

※ [원문 링크 2: 유럽 직업 카드 발급 시점](#)

산업 진흥

【EU의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Galileo) 프로젝트】

□ 추진 배경

- 뛰어난 정확성을 갖춘 유럽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

- 2020년까지 총 30대의 갈릴레오 위성을 지구 중궤도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5년부터는 3대의 아리안로켓 5호를 사용하여 한 번에 기존의 2대가 아닌 4대의 위성을 발사하게 될 예정
 - 2011년과 2012년에 각 2대 씩 총 4대의 궤도상 검증(IOV)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2014년 8월 22일에 완전운용능력(FOC) 위성인 갈릴레오 5호기와 6호기를 발사하였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

- 적용 시점 : 2020년까지 완전 운용을 목표

□ 기대 효과

- 운용 후 20년간 위성 기반 산업에의 응용 및 공공시설 발전 등을 포함한 갈릴레오의 사회 경제적 편익이 약 9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원문 링크](#)

[EU 노인 홈케어 로봇 시스템 Giraffplus 2015년 말 상용화 추진]

□ 추진 배경

- 지라프플러스(GiraffPlus)는 지라프테크놀로지(Giraff Technologie)가 개발 중인 로봇으로 환경 및 생리적인 센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정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주요 내용

- 지라프테크놀로지는 2015년 말부터 지라프플러스를 상용화할 계획
 - 현재는 유럽 내 여섯 가정에서 테스트 중이며, 내년 말부터 선불 요금 및 월별 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EU 예산 중 300만 유로가 본 사업에 투자되었으며, EU는 유럽 디지털 의제를 통해 노인인구를 위한 IT 기술 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할 계획
- 적용 시점: 2015년 말

□ 기대 효과

- 현재 3조 유로 규모의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는 65세 이상 유럽 노인 인구가 노인 홈케어 로봇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
- 지라프테크놀러지社 CEO인 Stephen Von Rump는 2016년 노인 홈케어 로봇 시장이 130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원문 링크](#)

【전자 공공조달 단계적으로 의무화】

□ 추진 배경

- 공공조달시 구매자 및 공급자 모두에게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및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 경쟁 필요성

□ 주요 내용

- 2016년부터 전자조달(e-Procurement) 단계적으로 의무화
 - 2016년 3월까지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 의무화
 - 2017년 3월까지 중앙조달기관에 대해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 의무화
 - 2018년 9월까지 전 조달기관에 대해 전자서류제출 의무화
-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인 E-Certis를 도입하여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

- 적용 시점: 2016년

기대 효과

- 입찰 참가 기업의 편의와 입찰 절차의 투명성 기대
- 역외 기업의 EU 공공조달시장 접근성 향상

※ [원문 링크](#)

 통화정책

【2015년 리투아니아 유로존 가입】

추진 배경

- 유로화 사용국(Eurozone) 확대를 통한 역내 통합 가속화

주요 내용

- 리투아니아 유로화 사용
- 교환 비율: 1유로 = 3.45280 리타스
- 리투아니아 은행은 ECB의 직접 감독 받게 됨
- 적용 시점 : 2015년

기대 효과

- 세계 주요 기축통화 중의 하나로서의 유로화의 위상 확대 및 유로화에 대한 불안감 감소

※ [원문 링크](#)

【SRM 이사회 본격 가동】

□ 추진 배경

-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가 2014년 8월부터 가동 시작

□ 주요 내용

- 각 국별 부실은행 관리 기구와 협력하에 이사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부실은행 정리 계획을 수립토록 함
- 각국의 은행정리기금 운영 시작
- 기타 본격적인 업무는 2016년 1월부터 추진 목표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EU 금융동맹(금융 부문 통합 관리·감독) 심화

※ [원문 링크](#)

【2015년 ECB 연간 통화회의 일정】

□ 추진 배경

- 정기적인 ECB 회의를 통한 역내 통화정책 투명성 제고

□ 주요 내용

- 1달에 두 차례 정기회의 개최
- 대부분 ECB 본부가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
- 정기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 2015년도 ECB 통화정책회의 일정
 - 01.22일, Governing Council: monetary policy meeting in Frankfurt
 - 03.05일, Governing Council: monetary policy meeting in Cyprus
 - 04.15일, Governing Council: monetary policy meeting in Frankfurt
 - 06.03일, Governing Council: monetary policy meeting in Frankfurt
 - 07.16일, Governing Council: monetary policy meeting in Frankfurt
 - 09.03일, Governing Council: monetary policy meeting in Frankfurt
 - 10.22일, Governing Council: monetary policy meeting in Malta
 - 12.03일, Governing Council: monetary policy meeting in Frankfurt
- * 통화정책결정회의는 회의개최 후 Press Conference를 결정내용 발표

□ 기대 효과

- 빠르게 변화하는 통화정책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

※ [원문 링크](#)

2

주요 국가별

독일

【2015년 최저임금제 개편】

□ 추진 배경

- 2013년 기준 시간당 8.50 유로 이하와 8.50~9.99 유로의 임금을 받는 고용인원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각각 약 10%씩 총 20% 차지
- 최저임금제 도입의 주목적은 국가적 복지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소득 보장 및 저임금 경쟁 방지

□ 주요 내용

- (2015년부터 시행 내용) 1.1일부터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
 - 다만, 만 18세 미만의 인구는 적용 제외, 장기실업자의 경우 취업 6개월 경과 후 적용
 - 견습생 및 인턴직원 역시 학과과정 중 의무로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초과 시 최저 임금제 적용
- 2016년 12.3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적용해 노사합의에 의해 시간당 8.5유로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지급이 가능
- 적용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독일 내 최초의 법적 최저임금 보장으로 약 400만 명 근로자의 임금 상승 혜택 예상
 - 부당한 저임금 근로 피해 감소 예상
 - 일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체계적인 임금 체계가 정착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 반면, 이에 따른 독일 내 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증대와 아울러 기업의 인원 감축 및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통상적 우려 상존

※ [원문 링크](#) (독일어)

[E-모빌리티법(E-Mobilitaetsgesetz) 시행]

□ 추진 배경

- 독일정부는 2020년까지 최소 100만대, 2030년까지 600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목표 하에 국가차원의 전기자동차 개발계획 추진 중
- 독일자동차청(KBA)에 의하면 2014년 1월 1일 기준 독일 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대수는 총 97,731대(독일 내 총 차량수의 0,2%)인데 이 중 전기자동차 12,156대, 하이브리드차 85,575대로 정부의 목표 수치에 크게 미달
- 독일정부는 전기자동차 구매시 중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 같은 재정적 지원 대신 R&D 지원에 중점

□ 주요 내용

- 독일 내각, 2014년 9월 26일 E-모빌리티법 초안 결정
- 적용 대상
 -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순수 전기자동차
 -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CO₂ 배출량이 최대 50g/km 준수 또는 순수 전기자동차의 최소 주행거리인 30km에 준할 경우 (2018년부터는 40km 적용)
-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요 혜택
 - 무료 주차, 주차료 할인, 특별 진입권
 - 전기자동차 충전소 내 주차장 예약
 - 버스전용차선 이용 허용권
 - 전기자동차에 대한 별도 차량표지판 도입을 통해 구분 용이
 - 독일 내 각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결정권 부여
- 적용시점: 2015년 2월
 - 동 법령은 2030년 6월 30일까지 유효

□ 기대 효과

- 2020년 100만 대에 이르는 국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목표 달성에 기여
 -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버스 전용차선 이용 혜택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
 - 향후 법령 발효시점까지 변동 사항 발생 가능
- CO₂ 배출량 감축 효과 및 잉여 전력을 활용해 전기자동차에 활용 가능

※ 원문 링크: [현재 동 법령 초안 미공개](#)

【사회보장금 산정 요율 변동】

□ 추진 배경

- 보험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적 의료 보험금 산정요율 인하를 통해 공적 의료 보험사의 재정 개선과 공적 의료 보험 가입자의 민간 의료 보험으로의 이탈 방지
 - 추가 보험금을 가능한 한 낮게 산정하면서도, 질적으로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
- 간병보험 인상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요 확대와 아울러 관련 의료서비스 개선 목적
 - '13년 기준 독일 내 간병수요는 총 248만 명

□ 주요 내용

- 독일 연방회의는 2014년 11월 7일 7차 사회보장금 요율산정법 변경
- (공적 의료 보험) 2015년부터 법적의료보험 산정 요율이 기존의 15.5%에서 14.6%로 인하
 - 이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법정 의료 보험 요율이 각각 7.3%로 인하
 - 아울러 의료보험사는 향후 소득격차에 따른 추가 의료보험금 청구 가능, 이 경우 의료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향후 소득의 0.9% 추가 청구 예상
- (간병 보험) 간병보험 요율은 2.05%에서 2.35%(무자녀의 경우 2.6%)로 인상(+0.3%), 이에 따른 고용주와 고용인의 부담은 각각 1.175%로 상승
 - 작센주의 경우 고용주 1.675%, 고용인 0.675%로 예외 적용
- 적용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소득격차에 따라 일부 소득근로자의 소득 인상 효과 및 고용주의 부담 감소
 - 의료보험 인하에 따라 총 2,000만 명에 이르는 공적 의료 보험 가입자의 부담 감소
- 독일 보건부, 간병보험료 산정 요율 인상으로 관련 서비스 개선 전망
 - 응급 의료서비스 예산 14억 유로 증가,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예산 역시 약 10억 유로 증가

※ [원문 링크](#)

[노후 난방시설 교체 의무화]

□ 추진 배경

- 독일정부, 2050년까지 기후보호 차원에서 독일 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실행 계획 추진 중
 - 특히 난방, 냉방, 온수, 환기, 조명 등을 통한 건물 내 에너지 절감 제고 방안 도입
 - 2014년까지는 1978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한 난방기기에 대해 교체 의무화 적용
- 환경 기준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과 소음 방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주요 내용

- 2014년 5월 1일 발효된 에너지절감법(EnEV) 2014에 의거해 2015년 1월부터 기존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1985년 이전 생산된, 즉 30년이 경과한 석유 또는 가스 난방기로 적용 확대
- 구 건물 내 1985년 1월 1일 이전 생산된 난방기기의 경우 사용 금지, 아울러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석유 또는 가스 난방기 역시 에너지 절감 모델로 교체 의무
 - 2002년 2.1.일 전 부동산 보유 및 해당 주택 거주자와 높은 효율성을 지닌 저온 난방기기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총 450만 개의 개별 난방기기가 먼지 필터 부착 또는 제품 교체 대상에 해당
- 노후한 난방기기의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개인의 건강 리스크 감소
 - 일산화탄소 배출 한도 기준 조정으로 연소 기술 투입 및 소음 등에 따른 불편 감소
 - 기존의 약 24,000t에 이르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5년까지 16,000t으로 감소

※ [원문 링크](#) (독일어)

【독일 화물차 통행료(Maut) 인하】

□ 추진 배경

- 독일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화물차 통행료(Maut)는 2005년 도입
 - 2012년 8월 이래 4차선 또는 그 이상의 차선을 가진 다수의 연방도로에도 적용
- 2014년 7월 30일 연방도로통행료법 (BFStrMG: Bundesfernstraßenmautgesetz) 개정안 발의

□ 주요 내용

- 2015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12t 이상의 화물차에서 7.5t 이상의 화물차로 적용 대상 확대

<독일 고속도로 내 화물차 통행료(Maut) 표지판>



자료원: verkehrsrundschau.de

- 2015년 7월 1일부터 1,100km에 이르는 4차선 연방도로 이용에 추가 적용
- 새로운 화물차에 대한 통행요율을 자동차배기가스 기준 Euro 6 준수 차량의 경우 km 당 약 2ct 감소한 12.5ct/km(3개의 차축 차량까지), 13.1ct/km(4개의 차축 차량부터)
 - Euro 5의 경우 km 당 14.6ct/km 및 15.2ct/km로 이전과 거의 동일

□ 기대 효과

- 독일 내 고속도로 및 연방도로 이용을 위한 통합 통행료 적용은 독일 도로 인프라 유지를 위한 재정에 큰 이점이 있고, 불필요한 관료주의 철폐 효과
- 통행료 하향조정은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비용감정 결과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정된 결과

- 독일정부는 화물차 통행료 인하에 따라 2015~2017년까지 총 4억 6,000 만 유로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원문 링크 \(독일어\)](#)



【노사 책임·연대 협약(Pacte de Resposabilite et de Solidarite) 개정 추진】

□ 추진 배경

- 프랑스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 기피 요인으로 사회보장세 및 법인세 부담이 지적됨
- 실업률이 2011년 9.3%에서 2013년 10.2%로 급등하여 사회적, 경제적 최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
- 2013년 12월 31일 올랑드 대통령, 대국민 새해 인사 시, 2017년까지 경제 0.5% 성장 및 고용 20만 명 창출 약속

□ 주요 내용

- 목적: 50개 산업 분야 노사 협약을 통한 고용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고용주에 대한 세제 혜택: 법정최저임금(1,445.38유로)의 신규채용직원 에 대한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 면제 및 사회연대세 감세
-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신규 채용직원 부담의 가족수당세 5.25% ~ 3.45% 감세

- 조건: 노사 협약을 체결한 산업분야 기업들
- 정부 예산규모: 2017년까지 400억 유로(감·면세)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GDP 0.8% ~ 0.9% 성장
- 향후 5년 기간 중 30만 명의 고용 창출
-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

※ [원문 링크](#) (프랑스어)

【경쟁력 · 고용증대 위한 법인세 감세(CICE) 제도 연장 실시】

□ 추진 배경

- 프랑스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해외시장 점유율 지속 감소 대책으로 CICE제도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장 시행 결정
- 200억 유로의 감세 재원을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충당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CICE제도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주식 배당금이 9.7%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주요 내용

- 법정최저임금의 2.5배미만의 급여(3,613.45유로)를 받는 신규 직원 채

용 시, 연봉의 6%를 법인세에서 감세(예산: 50억 유로)

- 감세 대상 고용 조건: 경쟁력제고를 위해 해외시장개척, 혁신, 연구개발, 신규채용, 운영자금확대, 환경 및 에너지 전환 동반 인력 채용
- 자영업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프랑스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확대
- 무역적자 감소
- 고용 증대

※ [원문 링크](#) (프랑스어)

【디젤차 폐차 지원 및 친환경차 구매지원 제도】

□ 추진 배경

-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저탄소 차량 구매 지원 및 고탄소차 구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시행 중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 증가로 예상치 못한 정부 재정 부담 증가
- 구매지원 대상구간을 줄이고 과징금 부과 대상구간 확대 정책 추진

- 파리 등 대도시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디젤차 운행 규제 등의 대책 마련 중

□ 주요 내용

- 기존의 친환경차 구매지원 정책과 연식 13년 이상의 낡은 디젤차 폐차 지원 정책을 연계시킨 전기차 보급 장려정책
- 13년 이상 된 디젤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500유로~3,700유로의 폐차 지원금 및 6,300유로의 전기차 구매 지원금 지원
- 고탄소차 구매 시 부과하는 과징금도 8,000유로까지 확대
- 적용 시점: 2015년

K2014년 프랑스 CO₂ 배출량별 보조금 및 과징금 현황>

(단위: 유로)

CO ₂ 배출량/km	보조금	CO ₂ 배출량/km	과징금
20g 미만	6,300	131-135	150
21-50g	4,000	136-140g	250
51-60g	4,000	141-145g	500
61-90g	150	146-150g	900
-	-	151-155g	1,600
91-130g	0	156-175g	2,200
		176-180g	3,000
		181-185g	3,600
		186-190g	4,000
		191-200g	6,500
		201g 이상	8,000

자료원: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 기대 효과

-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및 저탄소차 개발 경쟁 가속화 및 판매 증가

- 13년 이상 된 낡은 디젤차 퇴출 및 디젤차 시장 지속 감소
- 전기차 재충전 설비 투자 촉진
- 소형 가솔린 차 판매 지속 증가

※ [원문 링크](#) (프랑스어)

【일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 추진 배경

-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백의 사용량을 2019년까지 80% 감소하는 정책 목표를 채택하며, 각 회원국에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가
- 2014년 6월 나이로비 유엔환경회의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130억 달러에 달하며 바다의 생물체, 관광 및 어업을 위협한다고 경고
- 2014년 6월 프랑스 하원은 생물다양성 법안에 살충제의 사용 제한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등 일련의 환경보호 조치를 포함시켜 달라는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환경부 장관의 제안을 수락

□ 주요 내용

- 프랑스 유통업체들이 야채, 과일 매장에 고객용 일회용 플라스틱 백 또는 쇼핑백 비치 금지
- 적용 시점: 2016년

□ 기대 효과

- 약 120억 개의 일회용 비닐백 대체용 생분해성 비닐백 생산, 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예상
- 생분해성 비닐백의 자연 분해 성능 개발 노력이 가속화함에 따라 수질, 토양 및 바다 공해 감소 등의 환경보호 효과가 비례할 것으로 기대

※ [원문 링크](#) [프랑스어]

【국내식당의 자국 농산물 공공구매 촉진】

□ 추진 배경

-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유럽 농산물 수입중단에 따른 프랑스 농민들의 매출 및 소득 감소 대책 마련 시급
- 프랑스 정부에서는 자국산 농산물 구매 장려 정책 채택

□ 주요 내용

- 농업 장관, 36,700개 지자체장에 국제조달시장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 농산물 구매 방안 안내서 배포
- 안내서에서 구매 규모 9만 유로로 분산 구매하여 입찰 공고 등의 제약 없이 자국산 구매 등 구체적 노하우 제안
- 가격경쟁력 외에 환경친화성, 사회기여도, 품질 및 위생 등 근거리 지역 기업에 유리한 공급업체 선정 기준 도입 등 제시

□ 기대 효과

- 프랑스 학교, 병원, 공기업, 기관 등의 구내식당에서 구매하는 식료품의 40% 국산화
- 외국 농산물 수입 감소 및 농산물 무역수지 개선
-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투자 및 고용 증대

※ [원문 링크](#) [프랑스어]

【담배제품 온라인 구매시 처벌 강화】

□ 추진 배경

- 유럽연합 담배제품 생산, 제시, 판매 관련 지침 (2014년 4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40/UE 제 18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 정부는 담배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및 구매 시 벌금 부과 및 압수 중
- 이에도 불구하고 2013년 프랑스 세관이 압수한 온라인 불법 구매 담배제품 물량 22톤(2,746건)으로 지속 증가
- 담배유통업체들, 프랑스 담배수요의 20%에 달하는 온라인 담배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

□ 주요 내용

- 2014년 12월 5일 프랑스 정부, 2014년 정부 예산법 수정안에 불법적인 온라인 담배제품 구매 금지 및 범법 시 밀수범으로 간주, 최고 5년 징역 및 15유로~750유로의 벌금형 제안

-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담배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 동의를 얻어냄
- 적용시점: 하원 통과 후 상원 의결을 거쳐 2015년 내(상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르면 2015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

□ 기대 효과

- 프랑스 내 온라인 담배제품 판매, 구매 등의 유통행위가 일체 금지
- 유럽연합 내 담배제품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대 프랑스 및 차후 유럽연합 내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소비자들의 해외여행 시 합법적인 담배 구매량 증가 예상

※ [원문 링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COP21/Paris2015)】

□ 추진 배경

- 제19차 총회에서 2015년 11월 30일~12월 11일 프랑스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196개국 정부 대표들이 파리 북쪽 13km에 위치한 부르제(BOUGET) 공항에서 2주간 신 기후체제 합의 등 제반 기후 대책 총회

- 지구 온도상승 한도를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하여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 목표를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조정안 최종 합의
- 지구온도변화 방지대책 자금조달 방안 협의
- 지방정부, 민간단체 및 기업들의 동원 및 기여 방안 협의
- 개최 시점: 2015년 11월 30일~12월 11일

□ 기대 효과

- 2만 명 ~ 2만 5천 명의 각국 참가자를 비롯하여 총 4만 명의 외국인 유치에 따른 호텔, 식당, 여행사, 항공사, 운수업체 등 관련 업체들의 매출 증가
- 태양광발전,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도약 계기
- 친환경제품 생산 및 수요 증가
- 프랑스 및 개최 도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장기 관광 수입 증가

※ [원문 링크](#) (프랑스어)

【유럽축구선수권(Euro 2016) 개최】

□ 추진 배경

- 유럽축구연맹(UEFA), 2010년 5월에 프랑스를 2016년 EURO 축구대회 주최국으로 선정

- 1984년 이후 32년 만에 2번째 EURO 축구대회 개최(1998년 월드컵 포함 3번째 개최하는 국제축구대회)

□ 주요 내용

- 파리, 생드니, 보르도, 릴르, 니스, 리옹, 스트라스부르그, 렌스, 낭시, 샤키타엔, 마르세이유, 뚠루즈 등 12개 도시에서 51경기 개최
- 4개 경기장 신설 및 8개 기존 경기장 현대화에 정부 및 개최 도시 17억 유로 투자
- 개최 시점: 2016년 6월 10일~7월 10일 (1개월)

□ 기대 효과

- 10억 유로의 관광수입 증가(호텔, 식당 등)
- 40억 유로의 간접 수요 창출 예상
- 1만5천명의 단기 고용 창출 및 4,500명의 일자리 창출
- 13억 유로의 민간투자 증가
- 25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포함)
- 프랑스 및 개최 도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장기 관광 수입 증가

※ [원문 링크](#)

영국

【스코틀랜드 독자 조세권 시행】

□ 추진 배경

-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요구에 따른 중앙정부의 회유책의 일환으로, 2012년 스코틀랜드 특별법을 제정, 기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가진 권한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
- 2014년 9월 18일 독립 찬반 주민투표 결과 독립이 무산되었음에도 지방분권 확대는 강행

□ 주요 내용

- 2015년 4월 1일(영국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하여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부가세와 공항세는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징수하며,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세수로 편입됨
- 2016년 이후 다른 세목으로까지 조세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세부방침은 결정된 바 없음.(2015년 5월 총선 이후 변화 예상)
- 적용 시점: 2015년 4월

□ 기대 효과

- 스코틀랜드에서 '13/'14 회계연도에 거둔 세수는 약 200억 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를 '15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스코틀랜드에 지원하지 않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공공예산으로 전용할 계획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복지지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 공공 조달 사업기회 증가 기대

※ [원문 링크](#)

【이민규제 강화】

□ 추진 배경

- 영국정부는 2017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5년 5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음
- 그 전에 EU 회원국 유지조건에 대한 EU측과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민규제를 협상카드로 활용
- 영국은 EU회원국으로 역내 거주와 노동의 전면자유를 보장하는 EU 조약상 EU 출신자들은 무제한으로 입국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국인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어 왔음

□ 주요 내용

- EU회원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의 이민자들은 영국 입국 후 최소 4년이 되어야 영국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을 들 방침
- 또한 이민자들이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주지 않고, 강제출국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
- 적용 시점: 2015년 연내(시행날짜 미확정)

□ 기대 효과

- EU출신자에게도 제 3국과 같은 수준으로 이민을 제한하면 한국 등 제 3국 노동자 또는 기업의 투자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 이 정책이 EU의 기본이념인 거주와 노동의 자유에 정면 위배되는 정책이지만, 이민자의 입국자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회원국간 상이한 복지수준의 차이를 이유로, 영국 복지혜택의 제공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E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는 입장
-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은 새로운 이민법이 EU 출신 이민자중 약 연간 30만명 이상이 영국에 오지 않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보이고, 매년 약 80억 파운드의 복지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원문 링크](#)

【IoT에 정보보호법 적용】

□ 추진 배경

- IoT가 영국정부의 육성대상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로 선정되었고, 민간에서 IoT 관련 제품이 등장하는 가운데, 현재 EU차원의 IoT 관련 정보보호 지침은 2017년이나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영국정부는 2017년 전까지 1998년 영국 정보보호법을 IoT에 적용시켜 규제할 방침

□ 주요 내용

- 1998년 제정된 영국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이 2015년부터 IoT 분야에 확대 적용됨

- 정보통신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는 취급 정보의 최소화 (data minimisation)와 무명화(anonymisation)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 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에서 행하는 사생활침해여부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됨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기존에는 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통신사에 그쳤으나, 정보보호법의 확대적용으로 모든 통신가능 기기와 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자 또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됨

-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스마트홈을 통해 차량을 제어하거나 위치탐지 장비를 통해 자동운행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IoT로 간주되어 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자동차와 같이 통신체계의 결합 또는 외부위협으로 사용자가 직접적인 물리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지만, 많은 제조사들의 입장에서는 규제부담이 증가

※ [원문 링크 1](#)

※ [원문 링크 2](#)

【2015~2020 초저배출 차량 개발 지원】

□ 추진 배경

- 영국정부는 대기오염 감축 및 차세대 자동차 산업인 초저배출차량 (ULEV: Ultra Low Emission Vehicle)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투자

□ 주요 내용

- ULEV 개발기업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원하기 위한 1억 파운드의 예산 배정
- ULEV 인프라 조성을 희망하는 도시의 시설 건립자금 3,500만 파운드 지원. 2015년 1월부터 무인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 현재의 전기자동차 대상으로 한 구매가격의 5,000 파운드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2017년까지 유지
- 적용 시점: 2015년 (2020년까지 정책 유지 예정)

□ 기대 효과

- 2015년은 무인자동차의 도로주행이 허용되어 영국 내 많은 도시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무료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어, 공공조달사업 기회 급증 예상
- 개인차량 외에도 ULEV 택시 보조금을 위한 자금 2,000만 파운드, ULEV 버스에 3,000만 파운드가 배정되어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지자체들의 공공사업 수요 증가 예상

※ [원문 링크](#)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 완화】

□ 추진 배경

- 지난 2010년 발효된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에 의해 강력한 정보보호 및 사전검열이 시작되어 많은 분야의 창작활동이 저해되고 있음
- 영국정부는 방송콘텐츠 등 문화분야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유통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

□ 주요 내용

- 특정물체를 보고 캐리커처를 만들거나, 특정 창작물을 패러디하는 식으로 비영리목적에 한하여 기존의 저작권 있는 창작물을 활용하거나 변형시키는 행위는 허용됨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단순히 문학적, 예술적 목적으로 기존 창작물을 활용할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창의적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조성 기대
- 많은 콘텐츠를 활용해야 하는 방송, 인터넷 등 산업분야에서 기업들의 저작권료 지출 절감 효과 기대

※ [원문 링크](#)



【신차환경세(BPM) 및 휘발유 소비세 인상】

□ 추진 배경

- 네덜란드 정부는 신차 구입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동하여 환경세(BPM¹⁾) 부과해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은 구입 시 환경세 면제
- EU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신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g/km로, 2021년까지 95g/km로 제한
 - *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g/km에 해당하는 차량무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커브(Limite value curve) 설정
 - * 2015년에는 차량 제조업체에서 등록하는 신차의 100%가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하여야 함. 2013년에는 75%, 2014년에는 80%로 규제조건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

□ 주요 내용

- 네덜란드는 2015년부터 BPM 면제 범위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89g/km이하'에서 '83g/km 이하'로 조정
- 가솔린에 대한 소비세를 2015년 1월 1일부로 0.9% 인상
 - * 네덜란드에서 Euro95 가솔린은 1.73유로인 반면, 벨기에는 1.63유로, 독일과 프랑스는 1.59유로, 룩셈부르크는 1.33유로일 것으로 예상
 - * 이에 네덜란드는 주변국 정부에게 소비세를 동일하게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주변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며 국경 주위의 네덜란드 주유소들은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음
- 적용 시점: 2015년

1) BPM : 차량등록세(네덜란드어로 Belasting van personenauto's en motorrijwielen)

□ 기대 효과

- BPM 면제범위를 조정함으로써 5억 7,900만 유로의 세수 확보 전망
 - * BPM 면제범위 조정 이전에는 2015년 예상세수가 13.2억 유로에 그쳤지만, 조정 이후에는 19억 유로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2015년에 신차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네덜란드의 민간 정책 자문기관 Ecorys는 BPM 인상으로 신차 판매가 52,000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소비세 인상으로 국경 주위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네덜란드 주유소들이 파산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
- BPM 면제범위는 향후에도 계속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한국산 자동차가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네덜란드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원문 링크 1](#) (승용차 및 오토바이 세금 / 네덜란드어)

※ [원문 링크 2](#) (2015년 예산 계획서 / 네덜란드어)

【노동법 개정】

□ 추진 배경

-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높은 실업급여가 정부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
- 현행 해고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짐

□ 주요 내용

○ (2015년 1월 1일부)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 변화

* 수습기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 중지 가능

고용계약 기간	현행 법	2015년 1월 1일 후
6개월 이하	수습기간 최대 1개월	수습기간 없음
6개월~2년	수습기간 최대 1개월	수습기간 최대 1개월
2년 이상	수습기간 최대 2개월	수습기간 최대 2개월

○ (2015년 1월 1일부) 유계약 해지 시 1개월 전 통지 규정 신설

* 유계약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용계약을 의미함.

* 현행법 상 유계약 해지 시 통지 규정이 없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고용주는 계약 종료 1개월 전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계약 갱신 여부와 갱신할 경우 계약 조건을 통지해야 함. 통지 의무를 어길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1개월의 월급과 동등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2015년 7월 1일부) 무기계약 전환 및 연속 고용계약 규정 변경

구분	현행 법	2015년 7월 1일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4번째 유계약 갱신 시	좌동
	또는 고용 계약 시작 후 3년	또는 고용 계약 시작 후 2년
연속고용계약(계약 갱신)으로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내 재계약 (3개월 이후 재계약시 첫 번째 계약으로 인정)	6개월 이내 재계약

○ (2015년 7월 1일부) 근로자 해고 절차 변경

해고사유	현행 법	2015년 7월 1일 후
회사의 경제적·재정적 사유 또는 병가 2년 후 해고	실업급여청(UWV) 또는 지방법원 중 고용주가 선택하여 해고절차 진행 * 실업급여청을 통해 해고시 명백하게 불합리한 해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지방법원을 통해 해고할 경우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름.	실업급여청을 통해 해고 * 과도기 해고보상금 지급
근로자의 근무실적 등 개인사유	(상기 내용 동일)	지방법원을 통해 해고 * 과도기 해고보상금 지급

- (2016년 1월 1일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실업급여(WW) 최장 지급 가능기간을 38개월에서 24개월로 점진 축소

□ 기대 효과

- 노동법 개정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해고비용이 낮아지고, 계약직 근로자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경제기획국(CPB)은 평균 해고비용이 낮아지며 노년층의 직업 이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또한 2만 개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법무법인들은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해고는 2015년 7월부터 무조건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해고를 하지 않고 더 높은 보상금을 지급해 퇴직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 해고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 예측함

※ [원문 링크](#) (네덜란드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변경]

□ 추진 배경

- EU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20% 향상시켜야 함.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EU 평균 20%로 높여야 함
- 네덜란드는 2012년 기준 에너지 최종 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5%에 그쳐 2020년 네덜란드 목표인 14%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

□ 주요 내용

- 북해에 700MW 용량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조성
 - * 350MW의 해상 풍력발전단지 2개가 조성이 될 예정
 - * 2015년 초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며, 2015년 12월 풍력발전단지 건설 입찰이 시작될 예정
- SDE+ 2015 (Stimulering Duurzame Energieproductie) 프로그램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조금 지급
 - * SDE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SDE+ 2015 프로그램에는 2014년과 동일하게 35억 유로의 예산이 편성됨.
 - * SDE+ 2015 프로그램으로 1kWh 당 최대 0.15유로의 보조금을 지급
 - * 2014년 대비 변동사항: 육상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의 바람세기에 보조금 연동(바람세기가 낮으면 보조금 추가 지급). 모든 신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생산용량이 0.5MW(또는 500kWp 또는 50Nm³/h)를 초과하는지 타당성 조사 시행
- 적용 시점: 2015년 중

□ 기대 효과

- 네덜란드 정부는 SDE+와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 14%, 2023년 16%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23년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4,450MW로 확대

※ [원문 링크](#)

【방송, 통신 및 전자 서비스 분야 부가가치세 제도 정비】

□ 추진 배경

- EU는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원칙을 좀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음
- EU는 2015년부터 일반 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통신, 방송, 전자 서비스도 소비자 또는 소비 기업이 소재한 회원국에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부가세 지침을 개정
- 네덜란드도 부가세법을 EU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

□ 주요 내용

- (현행)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방송·전자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과세

서비스 공급자	EU 1번 국가 소비자	EU 2번 국가 소비자	EU 역외 소비자
EU 1번국가 소재	1번국가 VAT 납부	1번국가 VAT 납부	VAT 미납부
EU 2번국가 소재	2번국가 VAT 납부	2번국가 VAT 납부	VAT 미납부
EU 역외 소재	1번국가 VAT 납부	2번국가 VAT 납부	VAT 미납부

- (개정) 일반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방송·전자서비스 제공시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 (EU 역외 소비자 제외)

서비스 공급자	EU 1번 국가 소비자	EU 2번 국가 소비자	EU 역외 소비자
EU 1번국가 소재	1번국가 VAT 납부	2번국가 VAT 납부	VAT 미납부
EU 2번국가 소재	1번국가 VAT 납부	2번국가 VAT 납부	VAT 미납부
EU 역외 소재	1번국가 VAT 납부	2번국가 VAT 납부	VAT 미납부

- *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게 서비스 제공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대리납부 메커니즘(Reverse Charge Mechanism)에 따라 서비스를 소비하는 기업에서 소재 국가에 VAT 신고
- * 예시) 헝가리(부가세 27%)의 소비자가 룩셈부르크(15%)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 원래 15%의 부가세를 적용 받았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27%의 부가세를 적용 받게 됨.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EU 역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의 국가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

<국가별 VAT 차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EU Member State	Current standard VAT rate	Universal pricing			Differential pricing		
		VAT excl. price (€)	VAT (€)	Total price (€)	VAT excl. price (€)	VAT (€)	Total price (€) (difference)
Belgium	21%	8.26	1.74	10.00	8.33	1.75	10.08 (+0.08)
Denmark	25%	8.00	2.00	10.00	8.33	2.08	10.41 (+0.41)
France	19.6%	8.36	1.64	10.00	8.33	1.63	9.99 (-0.01)
Germany	19%	8.40	1.60	10.00	8.33	1.58	9.91 (-0.09)
Hungary	27%	7.87	2.13	10.00	8.33	2.25	10.58 (+0.58)
Italy	21%	8.26	1.74	10.00	8.33	1.75	10.08 (+0.08)
Luxembourg	15%	8.70	1.30	10.00	8.33	1.25	9.58 (-0.42)
Netherlands	21%	8.26	1.74	10.00	8.33	1.75	10.08 (+0.08)
United Kingdom	20%	8.33	1.67	10.00	8.33	1.67	10.00 (=)

- * 주: Universal pricing은 공급업체가 VAT 요율변화에도 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10유로로 유지할 경우, Differential pricing은 VAT 제외 가격을 8.33유로로 동일하게 유지시키고 소비자가격을 변화시키는 경우임

자료원: EY 2015 VAT changes for telecommunication, broadcasting and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 소규모 회사의 경우 VAT 변화를 바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 KPMG 조사 결과 네덜란드 소기업 중 62%가 VAT 규정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6개 회사 중 1개사가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변
-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One-Stop-Shop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나, 이 제도를 통해서 네덜란드 국세청은 단지 VAT를 EU 회원국 국세청에 전달하기만 할 뿐 소비국에 따라 VAT 계산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함.
- KPMG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높은 VAT가 적용되면 가격을 올릴 것이라 답변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
- 일부 기업들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국가는 아예 서비스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해, 소비자들의 이용 가능 서비스 폭이 줄어들 위험도 있음

※ [원문 링크 1](#) (네덜란드 국세청 / 네덜란드어)

※ [원문 링크 2](#) (2015년 예산계획서 / 네덜란드어)

【네덜란드 공영방송국 구조조정】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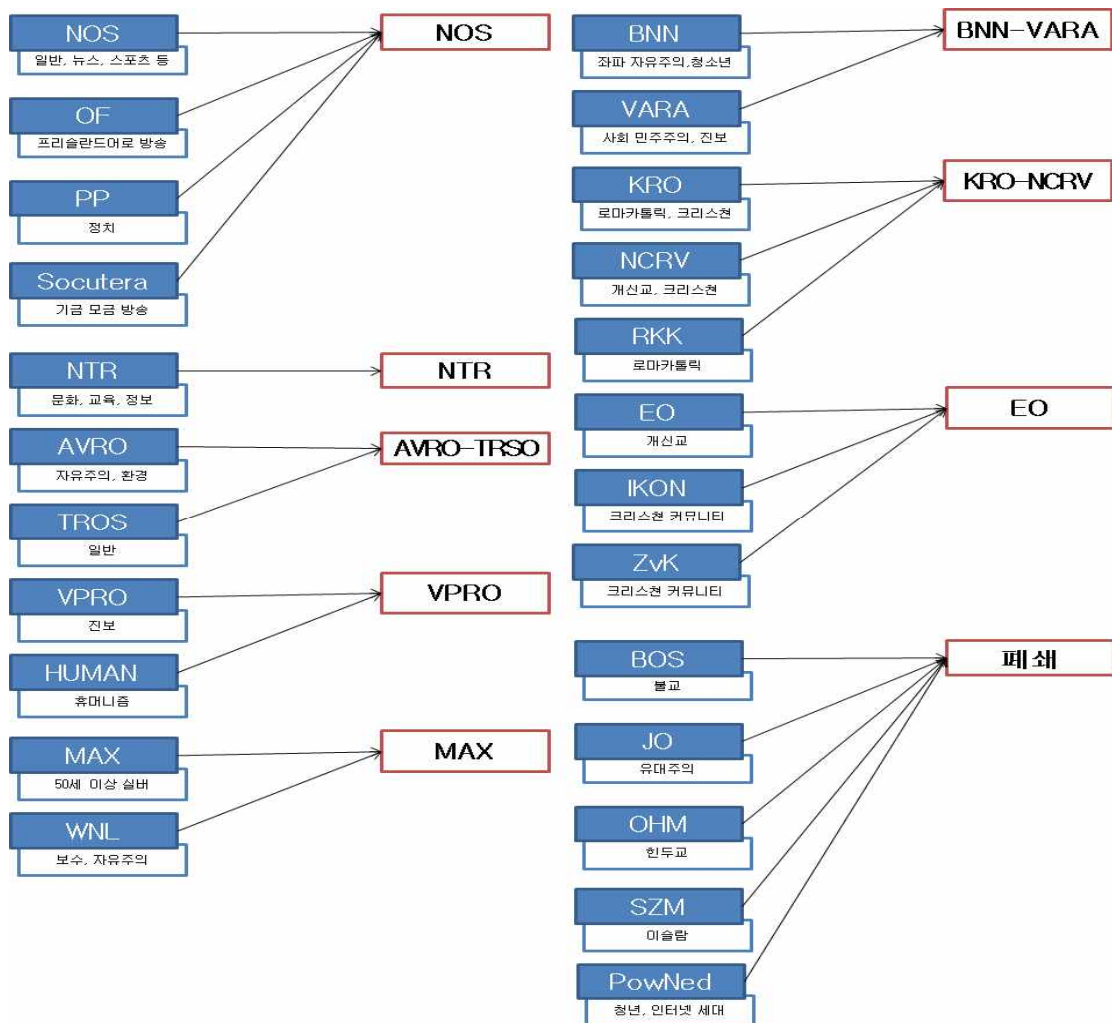
- 네덜란드의 방송시스템은 NOS, NTR 등 21개의 공영방송과 RTL, SBS 등 민영방송으로 구성
- 일반 민영방송사 외에도 최근 HBO, Netflix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사들이 생겨나며 경쟁이 심해지자 공영방송 내에서도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고품질 프로그램 생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

- 방송시스템을 단순화·효율화하고 공영방송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 정부 방송 개혁의 초점
 - * 2012년 연합정부 구성 시 합의에 따르면, 미디어 부문의 정부 예산을 2억 유로 삭감해야 함. 이 중 1억 2500만 유로는 공영방송 예산을 줄여야 함

□ 주요 내용

- 현재 24개에 달하는 방송사를 합병·폐쇄를 통해 2016년까지 8개로 축소
- 방송사 구조조정 후 공영방송의 역할이 강화되며, 방송시스템의 집중도가 높아짐
- 적용 시점: 2015~2016년

<2015-2016년 방송국 구조조정 계획>



□ 기대 효과

- 중앙정부는 구조조정이 방송국의 디지털화과 현대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좀 더 고품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글로벌 방송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5년 총 1억 6,400만 유로, 2016년 5천만 유로 예산 절감 기대
 - * 2015년 공영방송에서 1억 2,500만 유로, 국제 방송 채널에서 3,200만 유로, 음악 부문에서 1,700만 유로의 예산 절감 예정

※ [원문 링크](#)



【Job Act : 노동시장 개혁법】

□ 추진 배경

- 2008년부터 심화된 경제위기로 기업의 생산성 악화, 투자 위축, 청년 실업률이 47%로 최고점을 찍고 이로 인한 가정소득 감소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대두
 - 특히 까다로운 노동법으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려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
- 2014년 2월 렌치정부는 이러한 국가 저성장의 근원적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된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을 주창하고 나섰으며 그 일환으로 노동 시장 개혁법인 Job Act 입안을 추진

- 많은 논란 끝에 2014년 12월 상원에서 찬성 166표 반대 112표로 최종 통과

□ 주요 내용

- 정규직 계약(Contratto a tempo indeterminato) 채용시 노동자 권익 보호는 근무 년수에 따라 점차 증대되는 것으로 전환
- 해고 관련 제 18조항 수정
 - 기존의 경우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해고되었을 경우 복직이 허용되었으나 수정 법안에는 차별적, 징벌적 성격의 해고에 대해서만 복직 허용
 - 대신 회사의 경영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고되었을 경우는 위로금 명목의 수당을 최대 15개월까지 지급
- 임시직 계약 연장 허용
 -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
- 인턴 정규직 의무완화
 - 기존 인턴 정규직 채용전 추가 인턴 채용금지 규제 완화
- "Unico Contratto" 제도 시행
 - 40개 달하는 복잡한 임시직 계약형태를 하나로 단순화하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 10억 유로 규모 "유스 개런티" 프로그램

- 4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15세~29세 청년대상 현장 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 * 이탈리아에서 니트족(Neet:실업자이면서 직업을 구하기위한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 층을 의미) 비율은 21.1%로 EU평균 13.1%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실업급여 확대

- 현재 계약 종류에 따라 모든 실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나 기업규모, 나이, 지역 상관없이 모두에게 확대

○ 국가운영 구직센터(Centro d'impiego) 설립

- 현행 구직센터 통한 채용 비율은 5%선이나 이를 영국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및 EU 보조금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청년 실업 문제가 정치권 핵심이슈로 부상하면서 청년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이탈리아 사회가 드디어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 이탈리아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신규채용부터 적용될 동 개혁 법안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은 4년 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원문 링크](#) (이탈리아어)

【Unblock Italy : 건설 경기 부양정책】

□ 추진 배경

- 2014년 8월 이탈리아 정부는 약 430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한 이탈리아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 8월말 장관회의에서 법령으로 승인되면서 11월 효력 발생
- 동 조치는 유아원 건설부터 국가 기간시설 대규모 공사까지 투자를 위한 인프라, 에너지, 공공허가 금융등 광범위한 부문을 아우르는 개혁정책으로 특히 대형공사에 대한 행정적 허가를 단순화, 가속화시켜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표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나폴리-바리 구간 고속도로등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14개 대규모 건설 공사에 대한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하여 공사를 빠른 시일 내 착수시킴
- 지방자치단체 내 산재한 크고 작은 철도 및 도로 공사 착수
- 광대역망 확충
 - 30mbps 이상 초고속 인터넷망 연결율은 유럽 평균 16%, 영국 82%에 비해 이탈리아는 21%선에 머물러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 투자가 시급한 실정
- 항만청 수 축소 및 마리나 산업 육성
 - 현재 24개로 산재한 항만청 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마리나 리조트 계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적용등 세금 혜택으로 마리나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지질안정을 위한 투자 공사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 천연가스, 지열에너지 개발 투자
- 무역투자진흥공사 ICE를 통한 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적용 시점: 2015년 중

□ 기대 효과

- 행정적 허가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던 대형 건설 인프라 공사 착수 시기를 앞당겨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실업 문제 해결
-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위기탈출 해법을 찾아 2015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전망

※ [원문 링크](#) (이탈리아어)

【과세 경감 정책】

□ 추진 배경

- 2014년 2월에 취임한 렌치 정부는 탈세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통해 이탈리아 국민들이 안고 있는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과세경감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가정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함

- 실제로 2012년 매출액 10만 유로 이상 기업들의 32.9% 적자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30% 미만에 비하면 그 수가 확대
- 현지 기업 4개사 중 1개사는 적자의 주요 원인을 조세부담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
 - * 실제로 기업이 내는 생산활동세인 Irap의 경우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닌 생산금액에 대한 과세로 현지 기업들의 부담이 큰 상황
- 또한 국내 소비 약화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2014년 전망치)에 머무르면서 디플레이션 위기가 확산, 소비 촉진을 위한 가정소득 증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OECD가 발표한 Taxing Wages 2014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탈리아의 실질세 부담률(Tax Wedge)은 47.8%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내용

- 근로소득세(Irpef) 감면
 - 이탈리아 정부는 중하소득자 및 30세 이하 신규 고용자에 대한 약 100억 유로 규모의 근로소득세(Irpef) 감면 정책을 도입
 - 관련 법령 Decreto Irpef를 통해 2014년 5월부터 실시된 동 정책은 연간 8천유로에서 2만4천 유로 급여 소득자에 한해 매월 80유로의 보너스를 추가 지급, 수령 급여액이 높아지는 효과 발생
- 생산활동 지방세(Irap) 감면
 - 생산활동지방세(Irap)은 지방 공공보건의료 예산 확충을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기업, 공공행정부, 자영업자, 농업자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음

- 과세 부담으로 논란이 되어온 동 기업세의 10%를 감면 조치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연초 경기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2014년 이탈리아 경제 성장은 0.4%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 경제위기 탈출 해법이 필요한 상황
- 근로소득세 및 기업세 감면으로 소비, 투자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감면으로 인한 공공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기대가 엇갈리고 있음.

※ [원문 링크](#) [이탈리아어]

【Made in : 원산지 표기제도】

□ 추진 배경

- Made in 원산지 표기 의무제는 2005년부터 이탈리아가 자국 생산 중소기업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것으로 지난 2014년 4월 유럽의회에서 찬성 485표, 반대 130표, 기권표 27을 얻어 산고 끝에 통과됨.
- 사실 동 원산지 표기 관련 법안은 2010년 10월 유럽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의 반대와 WTO 원칙과의 양립 문제에 부딪쳐 EU 정상회의에서 좌초된 바 있음

- 하지만 현재 EU의 원산지 표기는 자발적인 것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그동안 원산지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유럽 재정위기와 더불어 제조 산업 공동화 위기의 가중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임.

□ 주요 내용

- EU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식품에 대해서만 의무화 되어 있는 원산지 표기를 모든 산업품목에 전면 적용하려는 것임
 - 단, 특정 식품 및 의약품은 제외
- 2~3개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마지막 제조 공정 혹은 본질적 제조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EU시장내 원산지 표기 조치의 의무화 실행은 의류, 신발, 가구등 브랜드 및 원산지가 결정적인 제품군들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산업 경쟁력이 우수한 이탈리아 제조 산업, 특히 중소기업 제조 산업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생산기지를 신흥국으로 이전한 이탈리아 기업 중 29%가 귀환, 18%는 향후 리쇼어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리쇼어링 현상에서도 보듯이 국외로 이전했던 업체들의 자국 귀환이 증대되면서 현지 높은 실업률 문제 해결에도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원문 링크](#) (이탈리아어)

【Smart & Start : 스타트업 기업 지원】

□ 추진 배경

- 청년실업이 43.7%로 1977년 이래 최고점을 찍고 2014년 실업율도 전년보다 다소 높아진 12.8%로 전망되는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탈출의 해법은 가능한 많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것이 중론
-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단순한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그치지 보다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 자체의 혁신과 고성장을 이끌고 이를 해외 시장과도 연계시키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

□ 주요 내용

- 이전에는 남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캄파니아, 풀리아, 칼라브리아, 시칠리아 주등에 남부지역에 국한해 보조금 형태로 스타트업 기업에 지급되어 오던 지원금을 Smart & Start라는 장관 법령을 통해 2억6천만 유로 (한화 약 3,482억원)의 총원된 예산으로 중북부 지역 스타트업 기업에까지 2015년 그 지원을 전면 확대할 방침
- 스타트업 창업 비용 혹은 적격비용(Eligible cost)의 70%를 상환 가능한 보조금 형태로 8년간 융자할 수 있으며 무이자 적용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출원된 하이테크 기계 관련 비용부터 외부 대출 비용에 소요되는 이자, 사내 인력에 대한 급여 혹은 전문 기술 협력 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스타트업 기업이 35세 이하 청년 혹은 여성에 의해 설립되었을 경우나 해외에서 연구 인력으로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해온 연구원이 스타트업내 포진해있을 경우 비용의 80%까지 무이자 융자가 확대된다는 것이 특징임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이탈리아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지원은 높은 청년 실업율을 완화하고 여성고용을 확대하며 해외로 자칫 유출되기 쉬운 자국 인재들을 지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원문 링크 \(이탈리아어\)](#)

스페인

【장기 실업자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14년 3분기 현재 스페인 실업률은 23.67%로, '13년 1분기 27.2%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16년까지 22% 이하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
- 고실업률 문제와 더불어 스페인 내 비숙련공 부재로 기업의 직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고용시장 공급은 미달하는 노동시장 불균형 상태가 심화
- 장기 실업 상태가 지속되며 중산층 붕괴, 내수침체와 같은 문제가 불거져 장기 실업자에 대한 복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

□ 주요 내용

- 예산규모: 10억~12억 유로
- 수혜규모: 40~45만 실업자
- 지원대상
 - 과거 직장 경험이 있는 1년이상 장기 실업자
 - 6개월 이상 정부 실업급여 미수령자
 - 무 수입자
 - 가족부양 부담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상기조건 충족자에 한해 6개월간 426유로/월 지급
 - 직업 교육, 진로 지도 제공
 - 멘토 지도하에 실업자 개인 능력별 공공 서비스 노동기회 제공
 - 사기업 인턴 근무경험 제공, 이 경우 급여는 정부:기업 50%씩 부담
- 지원시기: 2015.01.15.~2016.04.15.(15개월)
 - * 제도 종료 3개월 전, 제도 효과를 평가후 연장여부 결정

□ 기대 효과

- 직업 교육과 근무 경험을 통해 장기 실업자의 노동 시장 복귀 증가 예상

- 실업급여 지급으로 실업자 복지 향상과 내수 진작효과 기대

※ [원문 링크](#) (스페인어)

【탄화수소법 개정】

□ 추진 배경

- 스페인 정부는 재정위기 이후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간 다양한 부문에서 개혁을 진행해 옴
- 스페인 최대 정유기업인 렉솔이 카나리아 제도 지역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준비 중으로, 이를 대비해 법적 환경 재정비

□ 주요 내용

- 천연가스에 대한 조직적 시장(organized market) 개설
- 천연가스 시설 공인 설치업자에 검사 및 점검 서비스 병행 허용
- 타국과의 천연가스 공급 라이선스 상호 인정을 통해 신규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 허용
- 탄화수소 생산금액에 따른 신규 세금 도입해, 천연가스 채굴을 통한 소득을 해당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최종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고 투명한 가격 확보

- 신규 유통업체 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원문 링크](#) (스페인어)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

□ 추진 배경

- 그간 공공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세입확대 정책 시행의 여파로 저축 및 투자활동 위축
- 국가경제가 다소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세금부담 경감을 통한 일반 소비자 및 기업의 각종 경제활동 확대 유도

□ 주요 내용

- (개인소득세) 모든 납세자에게 평균 12.5%의 세금부담 경감
 - 가족부양자 및 장애인 납세자에 대한 혜택 강화
- (법인세) 현 30%에서 2015년 28%, 2016년 25%로 인하
 - 중소기업 및 신규 창업자에 각각 최대 20%, 15% 적용
 - R&D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강화
- 적용 시점: 2015년부터

□ 기대 효과

- 2015년 2천만 명의 납세자들의 소득 증대 예상
- 해당 조세개혁을 통해 2015~2016년 중 GDP 0.55% 증가 기대

※ [원문 링크 1](#) (스페인어)

※ [원문 링크 2](#) (스페인어)

【관광혁신 청년 사업가 양성 및 R&D 지원】

□ 추진 배경

- 관광업은 스페인 전체 GDP의 약 6.4% 차지하는 명실상부 스페인 주요산업으로 불황에 빠진 스페인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 견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 '14년 1월~10월 외국인 관광객 수는 관광객 집계상 최고치인 58.3백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 기록
- 스페인 산업 에너지 관광부는 '2012-2015 국가관광 플랜'을 설정하여 관광 인프라 현대화, 상품 다양화, 여행자 소비 증가 등의 방안을 모색중

□ 주요 내용

- 예산규모: 1.1억 유로
 - 청년 사업가 지원: 3천만 유로
 - 관광 혁신 프로젝트 R&D 지원: 8천만 유로

○ 지원내용

- (청년 사업가 지원) 40세 이하 청년 사업가에 한해 2년 기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용 100%, 기업자산 범위 내 1백만 유로 이하 금액 내 0.97% 고정이자, 5년 상환, 2년 거치 대출 지원. 보증금 없음
- (관광 혁신 프로젝트 R&D 지원) 1년 기한의 관광 혁신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 사업비용 75%, 기업자산 범위 내 1백만 유로 이하 금액 내 0.97% 고정이자, 5년 상환, 2년 거치 대출 지원. 대출금액 35% 보증금 필요

○ 적용 시점: 2015년 2월

□ 기대 효과

- 관광지 및 관광객 다변화 시도를 통해 관광객 및 관광수입 증가
-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 [원문 링크 1](#) (스페인어)

※ [원문 링크 2](#) (스페인어)

【지적재산권 보호 신규법안 제정】

□ 추진 배경

- 정보통신 발달과 함께 지적 재산권 침해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보호 필요
- '07년 20억 유로에 달했던 스페인 신문과 잡지 광고 수익이 '13년 7억 유로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신규 수익원 필요

□ 주요 내용

- 웹 사이트 상 링크, 부분 발췌, 제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정보 게재시 원작자에게 정보 이용료 지불
- 검색 엔진 또한 콘텐츠 공개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콘텐츠를 노출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
- 대학, 연구소의 경우도 예외 없이 적용
- 저작권 위배 콘텐츠를 게재한 웹 페이지 책임자에 대해 30만~60만 유로 벌금 부과
- 적용 시점: 2015년부터

□ 기대 효과

- 국회 법안을 상정한 집권 여당인 국민당(Partido Popular)의 일방적인 지지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야당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강화되지 않은 채 스페인 문화산업, 디지털 경제에 막대한 해를 입힐 것이라고 본 법안 반대
- 실례로 'Google Tax'란 별칭을 얻은 이번 새 법안에 대해 구글은 '14.12.16부터 구글뉴스를 폐쇄하고 글로벌 검색 서비스에서도 스페인 언론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대응
- 본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양분되고, 기업 반응이 거세어 법안 정착에 난항이 예상됨

※ [원문 링크](#) (스페인어)

폴란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합산과세(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s】

□ 추진 배경

- 폴란드 납세자들이 오로지 세무 목적으로만 하는 국외 투자를 막고, 특정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회사가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

□ 주요 내용

-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단순히 세금회피를 위해 특정국가에 외국법인(고정사업장 포함)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해당 유보소득을 폴란드 세율(19%)로 과세
- 적용 시점: 2015년

☞ CFC로 간주되는 외국법인의 범위

1. 소재지가 조세피난처(tax haven)인 경우
2. 소재지가 폴란드, 혹은 EU와 국제조세조약 또는 이중과세회피조약 미체결 국인 경우
3.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폴란드 법인이 연속적으로 30일 동안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 외국법인소득의 50% 이상이 배당, 이자, 로열티, 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등 수동적 소득이며,
 - 여러 수동적 소득 중 최소 하나의 소득이 거주지에서 면세되거나 14.2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기대 효과

-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피하는 사례 대응 가능

※ [원문 링크](#) (폴란드어)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s)】

□ 추진 배경

- 법인세법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과소자본세제 개정

□ 주요 내용

- 이자비용 손금산입한도 산정방식 수정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회사 범위 확대
- 기존 공제한도산정방식 이외에 특수 관계자 및 제3자간의 채무에 적용될 선택 가능한 한도방식 추가 도입
- 과소자본세제 대상 채무는 모회사와 직접자매회사로부터 차입한 채무로 한정되었던 것을 벗어나 간접지분율까지 고려된 그룹 내의 모든 관계사로부터 차입한 채무까지 그 범위 확장
-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부채/자본비율은 3:1에서 1:1로 하향조정 되고, 적용대상 자본은 현행 자본(share capital)에서 자본(equity)로 확장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과소자본세제는 특수관계사로부터 debt financing을 통해 조세혜택을 향유하는 모든 폴란드 법인에 중대한 영향

※ [원문 링크](#) (폴란드어)

【최저임금 70즈워티 상향 조정】

□ 추진 배경

- 폴란드 최저임금은 2104년 현재 1,680 즈워티(약 55만원)/월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
- 평균급여 수준은 과거 사회주의에 속했던 국가 중 4위 수준으로,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폴란드, 헝가리 순임.

□ 주요 내용

- 2014년 9월 11일,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를 통해 2015년도의 폴란드 최저임금은 2014년 대비 70 즈워티 상승한 1,750 즈워티/월로 결정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다른 EU국가로의 인력 누수현상이 완화 기대

※ [원문 링크](#) (폴란드어)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법령 개선】

□ 추진 배경

- EU의 Water Framework Directive, Floods Directive, Waste Water Directive 도입을 위해 수법을 비롯한 법 개정 준비
- 물관리와 관련한 EU 규제를 법제화 시키는 과정 진행 중이며, 새로운 폐기물 관리 시스템 관련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질서정연함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재활용 관련 규제 역시 2015년 개정 예정
- 2013년 7월 2일, 각료 이사회에서 “Action Plan for Strategic Planning in Water Management” 승인

□ 주요 내용

- 2015년말까지 홍수위험관리계획은 홍수위험평가 및 홍수위험지도 등을 마련하고, 홍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예정
- 물관리계획 능력과 수질 관리 및 투자시행 부문으로 나누어 수법(Water law)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사이의 특정 해역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하고, 물 사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도 변경
- 생활 폐기물 관리 시스템 부문의 변화는 공공재정 부문에 대한 부담은 없을 예정으로 국가예산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음
- 신규 시스템은 폐기물 관리에 따른 수익 자체에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재정 시스템
- 농촌지역의 물 공급 및 폐수처리를 비롯해 쓰레기 수거 및 분리 등 인프라 프로젝트는 RADP²⁾ 2007-2013의 “농촌경제와 인구에 대한 기본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지속될 예정

2) RADP : Rural Areas Development Programme

- 적용 시점: 2015년 중

□ 기대 효과

- 수질관리 및 수자원 보호, 수자원의 관리를 통한 홍수 대비, 물에 대한 투자 및 물사용료 등이 새로 정비될 것으로 보임.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범위 확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

※ [원문 링크 1](#) (폴란드어)

※ [원문 링크 2](#) (폴란드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추진 배경

- 기존 신재생에너지원(RES : Renewable Energy Source) 관련 지원방안 보장 및 신규 지원제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분기 발효 목표로 신규법안 도입 준비 중
- 2014.4.8일, 각료 이사회는 신재생에너지법 초안 채택

□ 주요 내용

- 채택된 초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어 광학설비, 마이크로 설비 등 에너지 생산자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는 작은 에너지설비 일수록 더 많은 지원
- 에너지 생산자는 기존의 지원제도와 신제도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경매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판매 매커니즘도 구축

- 신재생에너지법이 통과하는 첫 해 1천3백만 즈워티 규모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적용 시점: 2015년 중

□ 기대 효과

- 에너지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 이용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문의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있어서도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풍력 및 태양력 발전소 개발업자에게 전혀 다른 비즈니스 환경 될 전망

※ [원문 링크 1](#) (폴란드어)

※ [원문 링크 2](#) (폴란드어)

【폴란드 기업 혁신 강화 지원 정책】

□ 추진 배경

- 연구, 혁신, 산업정책 간 링크를 강화하고 기존의 세금 인센티브 등을 활용함으로써 혁신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마련코자 함
- 2014년 4월 각료 이사회에서 Enterprises Development Programme 승인

□ 주요 내용

- 2014-2020 Enterprises Development Program에 255억 즈워티가 할당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4-2020기간 폴란드의 OP(Operational Program) 계획에 맞추어 지속추진 예정

- 이에 투입되는 EU기금은 약 86.1억 유로 수준으로, 대부분이 자금이 OP Smart Growth를 비롯한 신규 OP에 투입
- OP Smart Growth는 기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R&D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산-학 컨소시움을 위한 자금 규모는 약 34.5억 유로, 혁신분야 지원에 약 24.2억 유로, 비즈니스 환경과 잠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약 10.7억 유로 배정
- 분야별 내용
 - (R&D) BRIDGE Alfa 이니셔티브, StartUp Hub Poland, Xplorer Fund 등 다양한 지원 기반을 통해, 에너지, 신소재, 운송 및 물류, 헬스케어, 음식산업 및 농업, ICT, 미디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R&D성과가 상업화 될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자 하며, 프로젝트 당 지원금 규모는 50만 즈워티 가량
 - (중소기업 지원) 2014.6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de minimis 프로그램을 2015년까지 말까지 연장 운영기로 결정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보증 용자로 일반 상업은행의 위험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것으로, 상업은행을 통해 1개사 당 3천5백만 즈워티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며 이 중 60%는 국가보증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전체 혁신주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제도의 마련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활동의 개발이 가능한 전략적 프레임 워크 구축
- 기술개발 혁신과 이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계가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 [원문 링크](#) (폴란드어)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

□ 추진 배경

- 국가 전역에 걸쳐 광대역 인터넷망에 접근 권한을 균등화하고자 함.
- EU집행위에 의해 EU기금을 활용한 OP의 하나로 “Digital Poland”가 승인되었으며, 2014.1.8일, 각료 이사회는 국가 광대역인터넷망 계획 (NBP : National Broadband Plan)을 승인

□ 주요 내용

-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행은 ROPs, RADP, OP IE, OP DEP을 통해 2015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
- 동부지역의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을 위해 14.4억 즈워티가 배정되었는데, 이 중 85%는 OP DEP(Develop Eastern Poland)로 배정된 EU 기금, 10%는 국가예산, 5%는 수익자 자기부담금으로 이루어질 예정
 - Regional OP는 26억 즈워티로, 프로젝트에 따라 co-financing 수준이 달라지게 되나, EU기금이 85% 이상을 넘지는 못하며, 나머지 부분은 수익자의 자기부담금으로 이루짐
 - OP IE(Infrastructure & Environment)는 8.4억 즈워티로, 주정부에 따라 EU기금과 수익자 자기부담금 비율이 달라짐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효과

- 2015년도 말까지 4만6천km의 백본망과 기지국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2020년에 이르면 폴란드 전체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원문 링크](#) (폴란드어)



【2015년 세제개정 - 직접세】

□ 추진 배경

- 헝가리 현 정부(Fidesz 당)는 이전 집권기인 2010.5월 출범이후 '보다 낮고 단순한 그리고 예측가능함(lower, more simple and predictable)' 어젠다 아래 조세정책을 통해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공약
- 2011.1.1.부터 기존의 누진소득세 대신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6%의 세금만을 부과하는 단일소득제를 도입
- 또한, 기존 년 매출액 포린트이하 기업에게만 적용하던 법인세 감면을 년 매출액 5억 포린트 이하 기업에게로 확대 적용
 - * 당시 헝가리 정부는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19%에서 10%로 감면할 계획이었으나, 회원국간 과도한 법인세 감면 경쟁을 반대하는 EU의 입장으로 미도입
- 2014.5월 Fidesz당이 재집권하며 이러한 기조는 큰 변화없이 이어질 전망
- 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 주요 방향
 - 가족을 지지하는 방향

- 중소기업을 위한 낮은 세율 적용
- 2010년 도입된 외국계 기업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너지, 대형유통업, 통신업)에 부과한 특별세는 2015년에도 이어질 예정
 - * 2015년에는 광고수입에 부과하는 광고세가 새로 도입될 예정임
- 소득에 보다 소비(VAT), 환경, 복지에 관련된 세율이 늘어났음
- 지방정부의 세금 인상권이 강화되었음

□ 주요 내용

○ 개인소득세

- 2016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매달 HUF 78,125의 소득공제가 적용됨
- 2015년부터 처음으로 결혼한 경우 매달 HUF 5,000의 소득공제가 적용됨
- 경영진에 의해 지불된 보험료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됨

○ 법인세

- 2015년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향후 5년을 한도로 세금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음. 단, 2014년도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최대 2015년도까지 공제 가능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과세제도

<참고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과세제도>

2013년부터 유한회사 (Kft.), 비공개 주식회사(Zrt.) 외국기업의 헝가리 지점 등의 기업이 다음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한 특별 과세제도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 과세 연도의 평균 고용자 수가 25명 이하 (계열사 포함)
- 과세 연도의 총 매출이 5억 포린트 이하 (계열사 포함)
- 과세 제도를 이용하기 전 기말 총자산이 5억 포린트 이하
-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
- 사업자 번호의 정지 도는 취소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특별한 조정을 통한 현금주의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에 16%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법인세, 사회보험세, 직업훈련기부금이 면제

- 지난해의 세금이 1백만 포린트를 초과하였거나 지난해의 이익이 100만 포린트를 초과한다면 선납세금을 매달 납부해야했으나, 2015년부터 분기단위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음
- 과세연도 총 매출 5억 포린트 이하(계열사 포함) 조건이 과거 매달 검토되었던 것에 비해 현재 매분기 검토되어 조건을 만족하면 됨

○ 적용시점 : 2015년

□ 기대 효과

- 2015년 헝가리 세제 개정에 대해 과도한 특별산업에 대한 세금부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막는 요인이라는 비판을 함
- 오르반 정부는 헝가리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많은 친가족지향적 세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됨
-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편의 제고가 예상됨

※ [원문 링크](#) (헝가리에)

【EKAER 시스템 도입】

□ 추진 배경

- 2015년 부가가치세법의 주요방향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철저히 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사기(VAT frauds)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주요 내용

- EKAER (Electronic road transportation control) system 도입
 - VAT 당국이 헝가리안에서 운반되는 재화를 추적하기 위해 도입됨. 동 시스템의 도입목적은 VAT 회피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임
 - 동 시스템 도입의 주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헝가리내에서 획득한 재화의 운반은 EKAER 번호가 발급된 납부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
 - EKAER 번호는 단일 운반건에 대해서 부여되며 발급일로부터 15일동안 유효함. EKAER 번호를 발급받은 자는 EKAER 시스템에 운반 정보를 온라인으로 VAT 당국에 보고해야함
 - EKAER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하기 정보가 있어야 함
 - 운반자가 화물을 인계받는 주소
 - 화물인수자의 VAT 번호
 - 화물인수지 주소
 - 물품에 따른 화물의 정보, 화물 운송의 사유 등
- 적용시점 : 2015년

□ 기대 효과

- VAT 신고 및 회피 단속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임
- VAT당국의 화물운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될 전망

※ [원문 링크](#) [헝가리에]

【광고세법 개정】

□ 추진 배경

- 경제부 장관은 공공 부담 분배를 위해 수입이 더 많은 기업은 적은 기업보다 더 큰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헝가리의 교육, 보건을 위해 세수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추진 내용

- 과세표준이 200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됨
- 세무관청은 광고세 징수를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광고주들은 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것임
- 미디어 회사들은 소득신고를 국세청(NAV)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
- 구글, 페이스북의 광고는 광고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연간 3천만 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광고관련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사항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광고서비스를 주문하는 시점에 광고주가 세무관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비용이 CIT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대 효과

- 독일계 방송사인 RLT Klub*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RLT Klub는 내년 50억 포린트를 광고세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힘
- 적용시점 : 2015년

※ [원문 링크](#) [헝가리에]

【담배특별세 제정】

□ 추진 배경

- 헝가리 경제부 장관은 2014년 11월 16일 흡연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을 발생시킨다며 헝가리의 국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특별세를 도입한다고 밝힘.
- 또한 EU 국가들의 평균 담배 세율을 따라가기 위함이라고 밝힘.

□ 추진 내용

- 2015년 2월 1일부터 12년 31일까지 특별세가 한 번 부과됨
- 담배 제조사 또는 유통사의 매출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부과됨
 - 매출이 3000만 포린트 초과 300억 포린트 이하인 회사에는 0.2%부과, 매출이 300억 포린트 초과 600억 포린트 이하인 회사에는 2.5%부과, 매출이 600억 포린트 초과인 회사에는 4.5%가 부과됨

- 2014년 12월 4일 국회 승인을 받은 수정안에 따르면, 2014년에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담배 기업들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함

- 적용시점 : 2015년 2월

□ 기대 효과

- 처음 헝가리 정부는 담배특별세를 통해 110억-120억 포린트의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했었음. 헝가리 국무총리는 수정 사항으로 인해 목표금액만큼의 세수확충이 불가능해졌지만 정부는 변경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힘.

※ [원문 링크](#) [헝가리에]

【식품 감독세 인상】

□ 추진 배경

- 헝가리 경제부 장관은 식품 감독세가 헝가리 내 유통되는 식품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의심스러운 원산지를 가진 식품들을 헝가리 시장 내에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

□ 추진 내용

- 현재 매출의 0.1%로 적용받는 식품관리 감독세를 연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누진세로 변경함.

* 매출이 5억 포린트와 500억 포린트 사이인 경우 0.1% 부과, 매출이 500억 포린트와 3,000억 포린트 사이인 경우 1-5% 차등부과, 매출이 3,000억 포린트 이상인 경우 6%를 부과함.

- 적용시점 : 2015년

□ 기대 효과

- 헝가리 정부는 식품감독세의 인상으로 헝가리 내 유통체인점들로부터 64억 포린트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함.

※ [원문 링크](#) (헝가리에)

[대형유통체인점 일요일 영업금지]

□ 추진 배경

- 2014년 10월 31일 헝가리의 기독교민주연합(KDNP)은 일요일 상점들의 개점을 제한하는 제안을 함. 일요일을 법정 휴무일로 지정하면 가족간 유대를 강화할 것이고 직원들의 노동착취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밝힘

□ 주요 내용

- 법안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중 법정 영업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10시 까지임
 - 일요일과 휴일에는 가게 운영을 할 수 없음
 - 1년에 다섯 번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 주며 영업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10시 사이어야 함
 - 12월 24일과 12월 31일은 예외적으로 상점들의 영업을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허용됨
- 다만, 숙박시설 안의 상업적 활동이나 서비스 활동들과 같은 관광서비스 산업들에 '관광업 예외(tourism service exempt)'를 적용함. 또한 다음과 같은 상업 단위는 일요일 운영이 허용됨

- 국영 담배 가게
 - 약국
 - 국제공항 안의 점포들
 - 기차역 안 또는 버스터미널 안의 점포들
 - 교도소 시설 주변지역
 - 건강 관리 기관 주변지역
 - 시장 및 농산물 직거래 시장
 - 박람회장 안의 점포들
 - 주유소
 - 군부대 안의 점포들
- 빵집이나 유제품 가게들의 운영시간을 평일에는 오전 5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특별 허용하고 있음. 뉴스가판대와 꽃집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하는 것이 허용됨
- 쇼핑 면적이 400 평방미터 이하이며 점포주가 개인 사업가 또는 가족단위 사업인 점포들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점포 운영이 허용됨
- 소비자 보호 당국은 상점들이 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적용 시점 : 2015년 3월

□ 기대 효과

- 테스코(Tesco), 스파(Spar), 쿵(Coop) 해외 대형 마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각 지역 헝가리 대형슈퍼마켓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헝가리 지열발전소 건설 착수】

□ 추진 배경

- 헝가리는 심층열수 개발 가능지역이 전 영토에 걸쳐 산재해 대체에너지 중 지열에너지 분야가 매우 유망함

□ 주요 내용

- 헝가리는 아이슬란드 만비트 (Mannvit)와 협력하여 헝가리 남단 버토너 (Battonya) 지역에 1억 1,600유로 규모의 지열발전소 건설 추진 중
- 해당 프로젝트는 EU 보조금 3,930만 유로와 국가개발부의 지원으로 2018년 말까지 12MV의 전력과 60MV의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건립 될 예정임
- 적용 시점 : 2015년 중

□ 기대 효과

- 대체 에너지 지열 에너지 시장은 헝가리의 자연적 특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열펌프와 같은 관련 산업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부다페스트 교통국(BKK),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AFC) 추진】

□ 추진 배경

- 부다페스트 교통국은 부다페스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대적인 방식의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AFC)을 새롭게 도입

- 뉴욕, 런던, 등의 여러 대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토대로 부다페스트에도 특수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를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함으로써 티켓 구입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독일 기업 Scheidt & Bachmann GmbH이 최종 입찰 과정에서 부다페스트 시와 교통국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5년간 시스템 운영과 디자인, 운임 요금 계획을 담당할 예정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에서 5,450만 유로의 규모의 투자를 보증했으며, 부다페스트 시(市)에서도 53억 포린트 상당의 투자가 2015~2017년에 걸쳐 단계별로 실시
- 교통운임요금은 시간제와 요금상한선을 두어 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대중교통 승, 하차 게이트에 자동요금징수장치가 설치됨
- 적용 시점: 2015년 중

□ 기대 효과

-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며, 기존에 존재하던 종이재질의 승차권은 점차 사라질 것
- 일반 시민뿐 아니라 학생, 관광객 등 다양한 소득상황을 고려해 제작되어 광범위한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

【헝가리 팩스(Paks) 원자력발전소 확장】

□ 추진 배경

- MVM(헝가리 국영전기공사)의 EU시장 내에서의 더 큰 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

□ 주요 내용

- 러시아 측에서 두 번째 원전 건설을 위해 100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
- 제1호 원자로는 2023년, 제2호 원자로는 2025년에 가동 개시
 - * 기존 원전 4기는 2032, 2037년에 가동 종료
- 헝가리 정부는 1억 1,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부지 연구, 환경 효과 조사, 공사 전반에 예산 중 우선적으로 280억 포린트가 쓰이며 인건비, 여타 비용, 공사 관련 비용에 나머지 금액이 쓰일 예정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새 원자로를 추가 건설함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차관을 빌려오는 반면 현재 헝가리 공공부채의 비율이 높아 상환 문제가 우려됨
- 제1원전이 현재 500MW (4개 원자로)규모로 생산하는 반면 새롭게 개발되는 원전은 2000MW(2개 원자로)규모로 생산 가능

【獨 앙겔라 메르켈 수상, 2015년 2월 중 헝가리 국민방문 예정】

□ 추진 배경

- EU 및 서방에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에 따라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 사업, 팩스(Paks) 제 2원전 건설 등 친(親)러시아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에 EU의 리더격인 독일에서 해당 현안에 대해 헝가리와 대화를 통해 직접 풀어나가고자 총리가 직접 방문

□ 주요 내용

- 독일-헝가리 우호 협정 25주년 기념 방문
- 공공행정 및 에너지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관해 논의
- 2015년 3월에 있을 첫 번째 추가제재조치 논의 이전에 헝가리를 방문 하여 헝가리 총리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회담하기를 희망
- 양국 간 군사정보교환 논의 예정
- 방문 시점: 2015년 2월 중

□ 기대 효과

-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러시아 대신 서방의 제재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지 여부에 따라 독일의 헝가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오르반 총리는 EU의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EU에게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와 정치 간섭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

체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변경】

□ 추진 배경

-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 가입 이후 EU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
- EU 방침 변경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기업 규모에 따른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지원이 축소될 방침

□ 주요 내용

- 기업 규모에 따른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지원이 대기업의 경우 40%에서 25%로, 중기업 50%에서 35%, 소기업 60%에서 45%로 축소됨
- 체코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 축소로 인한 투자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전략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5%에서 10%로 증대, 신규직원의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현금 지원을 25%에서 최대 50%로 확대, 부동산취득세를 산업특구에 한해 5년 동안 면제시킬 방침임
- 법인소득세 10년 동안 감면, 부지 구매 시 우대가격 적용은 이전과 동일함
- 적용 시점: 2015년 상반기

□ 기대 효과

- 기업 규모에 따른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지원 축소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대부분인 대기업의 정부지원이 40%에서 25%로 축소되어,

투자위축 우려됨

- 한편, 체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투자규모가 346백만 달러로 아시아권 투자국 중 1위를 기록하였음. 체코 내 한국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체코 정부가 한국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상반기 서울에 체코 투자청 한국지점을 오픈할 예정임

【최저임금 인상】

□ 추진 배경

- EuroStat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체코의 최저임금은 EU내 하위 9번째 국가임. 이에 체코정부가 유럽 평균의 40%수준 까지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발표함

□ 주요 내용

-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8,500코루나 (약 382달러)에서 9,200코루나(약 413달러)로 인상, 적용되며 인상폭은 8.2% 수준임

<체코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지급 구조>

* 1달러= 22.231코루나

	급여 (세금 공제 전)	급여 (세금 공제 후)	고용주 세금	직원 세금
현재	8,500코루나 (382달러)	7,565코루나 (340달러)	2,890코루나 (130달러)	935코루나 (42달러)
개정 (2015.1)	9,200코루나 (414달러)	8,188코루나 (368달러)	3,128코루나 (141달러)	1,012코루나 (46달러)

자료원 : 체코노동부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 측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고용창출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 우려됨
- 체코 정부가 점차적으로 EU평균의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고용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

□ 추진 배경

- 체코의 부가가치세 법안은 EU 부가가치세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100만 체코 코루나(약 4.4만 달러)를 초과하는 체코 법인, 체코 공화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코 법인은 부가가치세 대상 업체로 등록해야함
 - 체코에서 과세가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모든 외국 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을 통해 체코 정부는 유아가 있는 가정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상품 가격의 약 4%를 낮춰 가계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함

□ 주요 내용

- 서적, 의약품, 이유식, 기저귀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예정

<체코 부가가치세율 현황>

세율	제품 및 서비스 품목
21%	- 기본세율, 하기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적용
15%	- 거주지용 건물 건축 및 수리 관련 서비스

세율	제품 및 서비스 품목
	- 상수, 하수처리 관련 서비스 - 일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 영화, 박물관과 같은 문화 관련 행사 입장료 - 스포츠 경기, 체육시설 사용과 같은 스포츠 관련 행사 입장료 - 음료를 포함한 식료품 (주류 제외) -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및 서비스 - 서적 및 광고가 내용의 50% 이하인 잡지 - 냉난방 설비 서비스
0% (부가세 면세대상)	- 수출입을 목적으로 한 국제 운송 서비스 - 선물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재화의 공급

자료원 : 체코 통계청

- 적용 시점: 2015년

□ 기대 효과

-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을 통해 유아가 있는 가정의 과세 부담 연간 약 1만 체코 코루나 하락 및 세율 인하를 통해 상품 가격의 약 4%를 인하, 가계소비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부정적인 측면으로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이 도입되는 연간 30억 체코 코루나 가량의 국고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 도입은 세법을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세율 인하가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판매자들의 마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되고 있음
- 세 번째 부가가치세율의 품목 특성상(도서, 의약품, 이유식, 기저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전자제품 등 제조업 중심으로 진출한 현지 우리 기업에 새로운 부가세율 도입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쓰레기 매립 관련 신규 계획]

□ 추진 배경

- EU 환경 정책에 의거 체코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양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2024년에 쓰레기 매립을 금지할 계획임

□ 주요 내용

- 2003년~2013년 재활용, 폐기물의 재생에너지화, 매립 세단계로 구성된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EU기금이 5억 2천만 유로가 지원되었는데, 상기 프로그램을 2014년까지 연장한 바 있음
- 2015년~2024년까지 적용되는 신규 폐기물 관리규정을 재정중임

<도시 폐기물 관리 데이터>

	Generation	Recovery	Recycling	Energy recovery	Landfilling
Municipal Waste 2010	5,36 mil. tons	33 %	24 %	9 %	59 %
Municipal Waste 2011	5,39 mil. tons	42 %	31 %	11 %	55 %
Municipal Waste 2012	5,19 mil. tons	42 %	30 %	12 %	54 %

자료원 : 체코 환경부

- 폐기물을 여러 가공·처리 방법을 통해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가스 연료, 폐열 등을 생산하고 이를 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브르노, 프라하, 리베레츠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지역별 브르노에서 연간 240,000톤, 프라하에서 연간 310,000톤, 리베레츠 지역에서 연간 96,000톤을 에너지화 하고 있음

- 적용 시점: 2015년 중

<폐기물에너지 재생 설비 위치>



자료원 : 체코 환경부

□ 기대 효과

- 2020년까지 EU의 재활용 지침인 5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폐기물의 에너지 재생을 통해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소각장치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우리기업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제 아이스하키 월드컵 챔피언십 개최(2015 IIHF)】

□ 추진 배경

-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은 2004년에 이어 11년만에 국제 아이스하키 월드컵 챔피언십 주최국으로 체코를 선정함

□ 주요 내용

- 국제 아이스하키 월드컵 챔피언십은 2015년 5월 1일부터 17일까지 18일간 프라하의 O2 Arena 경기장과 오스트라바의 CEZ Arena 경기장에서 경기를 가짐
- 주요 경기가 열리는 프라하의 O2 Arena 경기장은 17,36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오스트라바의 CEZ Arena는 10,109명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규모의 경기장임

□ 기대 효과

- 250만 유로의 경기 입장료 수익을 포함, 총 1,700만 유로 수입 예상
- 수도인 프라하 뿐 아니라 개최 도시 오스트라바 시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장기 관광 수입 증가

/끝/



작성자

◆ 유럽지역본부	이수영 차장
◆ 브뤼셀 무역관	이재욱 과장
◆ 브뤼셀 무역관	김도연 대리
◆ 프랑크푸르크 무역관	강환국 과장
◆ 파리 무역관	김희경 차장
◆ 런던 무역관	장명철 과장
◆ 암스테르담 무역관	임성아 과장
◆ 밀라노 무역관	이수민 과장
◆ 마드리드 무역관	전수연 과장
◆ 바르샤바 무역관	박 민 과장
◆ 부다페스트 무역관	양효준 과장
◆ 프라하 무역관	박정현 차장



KOTRA자료 15-001

2015년 이후 유럽 각 국의 주요 제도 변화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윤원석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5년 1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